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21-1차(임시)	일자	2021.05.07. 19:00	장소	ZOOM화상회의
----	-----------	----	-------------------	----	----------

0 성원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	○	○	○	X	X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	○	X	X	○	○	8/13

*단위별 보고, 보고안건 생략

1 논의안건

1. 중앙감사위원회 개정안 논의

- 중앙감사위원장 참석 예정
- 첨부자료 참조

총: 중앙운영위원회 21차-1차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다. 보고안건은 다음 주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논의안건 1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중앙감사위원장님 대기실에서 수락하도록 하겠다. 우선 초대하기 전, 개정안을 훑어봤는데, 개정안 전문이 거의 다 개정되었다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고 개정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들께서는 질의 부탁한다. 중앙감사위원장님 제 목소리 들리시는지?

중감위원장: 네. 잘 들린다.

총: 저희가 현재 위원장님께서 보내주신 개정안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 개정안에 대해서 중앙감사위원장님 주도로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중감위원장: 제가 주도해서 설명 드리면 되는지?

총: 네

중감위원장:

알겠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중앙감사위원장 도시계획부동산학과 17학번 김우진이다. 우선 회칙을 개정하기에 앞서 각종 대학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찾아봤다. 실제로 4월 29일 경 송실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감위원장님을 직접 만나서 문단 간 요약하며 정리를 했고, 관련한 근거로 회칙개정을 진행하였다. 이에 앞서 송실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중앙감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련하여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다. 송실대학교의 경우 총학생회 선출 선거권자가 총 13,000명이다. 13,000명에 대한 선거인 수를 동일하게 중앙감사위원회도 적용을 하고, 현재 직접선출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앙대학교와 같이 학생회비와 교비, 이 정도 분류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감사위원회가 학생회비에 대한 전반적 감사를 진행하고 모든 자료를 검토 및 감사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대학교와 차이를 보인다면 단과대 감사 위원회의 구성이다. 송실대의 경우 별도의 단과대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어 단과대 감사와 중앙 감사로 분리되어 감사가 진행된다. 단과대 감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조직이냐고 설명 드리자면, 단과대 감사위원회는 중앙감사위원회에서 파견된 중앙감사 위원 1인이 단과대 감사위원장을 맡아 조직을 편성한다. 현재 제가 속해 있는 곳이 사과대이므로 사과대를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다. 송실대의 경우 사과대학생회의 경우 사과대 학생회 인원 2명, 그리고 지원자 2명을 포함한 단과대 인원 4명에 단과대 감사위원장인 중앙감사위원인(단과대 감사위원장) 1명이

포함되어 총 5명으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학생회 인원이 왜 포함되느냐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피감사기구에서도 인지해야하기 때문에 투명성 보장 부분이 강하다. 현재 감사 자료의 경우 온라인 제출이 아닌 직접 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복사본 3부를 중앙감사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해당 자료는 언제든지 모든 학우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중앙감사위원회실에 보관되고, 3년간 보관된다. 감사 일정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것이라 판단된다. 감사일정의 경우, 중앙대학교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송실대는 감사를 총 4차례 진행한다. 상반기 감사 그리고 공대감사, 하반기 감사, 이월금 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상반기 감사는 5월에 진행되고, 공대감사는 7월에 별도로 추가 시행된다. 공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공대를 따로 별도로 진행해 추후 하반기 감사 때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하 시면 된다. 그리고 하반기 감사는 11월 중에 이루어지고, 이월금 감사의 경우 하반기 감사 종료 이후에 진행된다. 그럼 각각의 감사에 대해 송실대 시스템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여타 기타 사항들을 간단히 설명 드리고 송실대는 마치도록 하겠다. 상반기 감사 때에는 총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단과대학과 같은 큰 단위체에 대해 중앙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진행하고 여타 학과/부 학생회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공대 감사 시에는 공과대학 및 예하의 학과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데, 이때는 마찬가지로 아까 언급 드린 단과대 감사위원회가 꾸려지며 단과대 감사위원회(공대 감사위원회)는 중앙감사위원회 중 한명이 공대 감사위원장을 맡아 내부 조직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감사 때에는 중앙감사라고 하는 큰 단위체에서만 진행됐었는데, 하반기 감사 시에는 전체 학과가 56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송실대의 경우 56개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총학생회와 동아리 연합회에 대한 감사는 중앙감사위원회가 맡고, 단과대 및 예하 학과/부 학생회의 경우 단과대 감사위원회가 편성되어 감사를 진행한다. 이후 진행되는 이월금 감사도 하반기 감사와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임기 종료 후의 감사이기 때문에 연락 상 전대 학생회와의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리고 공간, 장학금, 재정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선출직으로써 공간은 별도로 자치공간이 존재하고 해당 공간에서 대부분의 업무가 이루어진다. 학생회비 사용을 감시하는 기구의 목적상 재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운영 상 필요한 물품이 있거나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 학교 측으로부터 물품 형태의 교비를 지원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중앙감사위원회 역할 분담의 경우에도 사무팀, 홍보팀, 협의팀으로 나뉘어 각자의 역할 수행 중이다.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피감사 기구와의 교육이다. 회계 교육을 송실대의 경우 체계적으로 감사 한 달 전 마다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피감사 기구의 역할,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 지 까지 중앙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회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징계 같은 경우 1차적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징계를 심사하며 이외 추가 제출 기회를 종합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최대 징계 수위는 사과문 게시, 피해보상 청구, 나아가 총학생회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칙 상 사퇴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상 송실대는 마치고 외국어 대학교로 넘어가겠다. 외국어 대학교는 송실대와는 매우 많이 구조가 다르다. 상반기와 하반기 전학대회를 통해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분들, 지금 게시는 중운위 위원분들 중 2명을 선정하여 위원장단을 선정합니다. 중앙감사위원의 경우 전체 단과대 및 독립 학과/부 개수를 고려하여 정해지며 주로 단과대 및 독립 학과/부의 재정 사무국장(회계 국장)이 책임하는 편이다. 본인이 속한 단과대 감사 시에는 공정성 감안해 해당 단과대 위원이 감사에 관여하지 않은 채로 진행된다. 그리고 선출직 인원 중 2명이 중앙감사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수행하는 것이 정당성의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위반되지는 않지만, 선출직이라고 하더라도 중앙감사위원장을 뽑는데 학우들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표의 대상성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해했다. 나는 중앙감사위원장을 내 손으로 직접 뽑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중앙감사위원장을 뽑는 선거는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외국어대학교는 자치회비와 학생회비, 교비 세 개로 분류되어 학우분들께서 내는 예산이 관리된다. 자치회비는 등록금을 낼 때 납입하는 학생회비 9,500원과 동일한 개념이다. 학생회비는 따로 분류해 학과 단위로 4년 치 신입생 학생회비를 납부하는 등의 예시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치회비와 학생회비에 대한 전반적 감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자료를 검토 및 감사하고 있고, 단과대 감사위원회도 존재하는데, 이는 송실대와 동일한 사안이다. 단과대 감사위원장은 학과/부 학생회장 즉, 단운위원 중 1명으로 선출되고, 각 학과/부 재정사무국장(회계 국장)으로 구성된다. 이월 같은 경우, 만약 해당연도 하반기에 예산이 남아서 다음연도 상반기로 이월되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해당 연도 하반기의 예산을 다음연도 상반기로 이월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내용을

결정하며 총학생회 졸업 관련 사업으로 주로 쓰인다고 한다. 또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하는 항목인 만큼 금액에 대한 명확한 사용 기준이 존재하며 전학대회를 통해 예산안 승인을 받아야 해당 학기 간 자치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감사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다. 감사 자료의 경우 위원장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서류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 송실대의 경우 복사본 3부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어 대학의 경우 실제 서류, 원본을 제출하며 그 자리에서 스캔하여 감사 자료로 가지고 있다. 온라인으로 제출은 조작 우려 때문에 최대한 원본으로 받는 듯하다. 외대의 경우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의 감사 시행 세칙을 기반으로 하여 초안을 제작하였고, 수차례 개정 후 현재 수정안까지 다다를 수 있었다고 들었다. 공간은 별도의 자치공간은 존재하지 않고, 총학생회 공간을 대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기타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편이다. 감사관련 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디에 보관하느냐 하면, 마찬가지로 총학생회의 협조를 구해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재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기타 장학금에 대해서도 송실대와 다르게 학교 측의 지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회계 교육 같은 경우 별도의 외대 차원의 재정 협의회 자료를 통해 3차례 이루어지며, 1차 교육은 중앙 감사위원회, 2차는 피감사기구 담당자분들, 3차는 재정 집행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전학대회는 크게 정기 전학대회와 임시 전학대회로 구분된다. 정기 전학대회는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되며 중감위원장단 위원 인준, 일정 공고를 주로 진행하는 편이고, 감사현황 보고에는 항상 임시 전학대회 때 진행한다. 감사 진행사항, 결과의 경우 감사 종료 직후 바로 임시 전학대회를 소집하여 전체 학생 대표자분들께 감사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고, 어떤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과정이 이때 진행된다고 한다. 큰 단위의 모든 대표자 분들께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전학대회 말고는 크게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징계의 경우, 서면요청 불이행 시 1회 경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1회 주의, 주의 2회는 1회 경고, 경고 3회 누적 시 자치회비 전액 환수라고 한다. 해당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어 보았다. 자치회비 전액 환수가 어떤 개념이나 중앙대학교의 경우에도 학생지원팀에서 예산을 받아 학생회 쪽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학생회비가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로 전달이 되는데, 이때 만약 경고 3회가 누적되었을 시 징계를 통해 모든 금액을 환수한다고 한다. 환수금액은 당시 남아있는 금액이 아닌 초기에 최초적으로 발생했던 자치회비 비용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미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단위 소속의 대표자분들의 기타 장학금으로 메꿔서 전달을 한다고 한다. 완전한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타장학금까지 취합하여 최초의 금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중앙대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안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우선 징계같은 경우에 외대의 사례를 언급해드렸기 때문에 첨언을 조금 해드리면 자치회비 환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 중간에서는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각 모델의 장점을 적절히 조사를 해서 현재 중감위 상황에 맞게 수정을 하였고 송실대의 틀을 따르냐 외대의 틀을 따르냐 둘 중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전략과 부합한 부분이 있을 거고 저희에게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상이할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둘의 장점을 조합을 해서 결정을 했고, 그렇다면 타 학교 회칙을 그대로 끌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반문이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한다. 중앙대학교 상황에 맞춰서 중앙대학교 회칙을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논의를 거쳐서 변경을 했고, 타 대학 회칙을 그대로 다 모두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다. 저희 차원에서 가장 큰 변화는 중앙감사위원회와 단과대감사위원회의 분리라고 생각한다. 단과대감사위원회 구성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추후 이어질 회칙 개정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효과적인 거라는 판단이 들고, 각종 워딩이나 이런 부분들도 수정을 했고 기존의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도 이번 개정을 통해서 전부 다 수정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을 했다. 중앙대의 경우 이 부분은 제가 타 대학 사례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뒤이어 이어지는 회칙과 관련해서 이해하시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든다. 무리가 있으시다고 하시면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대의 경우부터는 한번 쪽 훑어봐주시면 감사드리겠다. 그럼 이제 개정안 세부내용으로 넘어가겠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 중에 설명이 부족했거나 또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중운위원분들 계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총: 중운위분들도 자료를 30분 전에 받아봤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요. 바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감위원장: 네 알겠다. 우선은 저희가 타 대학 조사가 들어간 시점이 4월 29일이다. 최대한 타 학교의 일정
에 맞췄다. 시험기간이 겹칠 거기 때문에 시험기간 종료 이후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판단을 했
고 그 이후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회칙개정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린 점 그래서 30분 전에 제출을 드린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만약에 다음 회칙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최대한 기간을 준수를 해서
하루 전 이틀 전에는 꼭 받아보실 수 있게끔 일정을 조율하겠다. 시작하겠다. 우선 제1장 총칙에 관한 부분입
니다. 1조에 설립 근거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칙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본 회칙을 둔다. 제2조 명칭 본 회는
중앙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라 한다. 이하 중감위라고 한다. 우선은 설립근거를 목적과 합쳐서 조항을 구성을
했고 타 대학 회칙을 검토를 하면서 설립 근거를 의거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존의 목적과 통합시키는 사
례를 보아서 최대한 목적에 부분이 앞으로 갈 수 있게끔 1조 명칭 이외에 목적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그래서
제2조를 보시면 본 회칙은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칙 부칙 제 4조에 의하여 중앙대학교 학생 자치 기구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명시를 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제3조도 수정이 되었다. 동등한 위치에서의 감사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감사의
목적이 아닌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중감위의 당연한 의무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은 뒤에서 언급을 하는
쪽으로 개정을 진행하였다. 혹시 총학생회장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 질문이 나오는 시점에 중운위원분들
께서 발언을 하시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지?

총: 네. 우선 쪽 훑어주시고 한꺼번에 질의 받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자료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번 배경설명해주시고 한 번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감위원장:

네 알겠다. 피감사기구인 다음 각 호와 같다. 뒤에 보면 감사 대상이라는 항목이 있다. 우선은 감사 대상에
대한 워딩을 먼저 변경하였습니다. 사실 동등한 규정에서의 감사는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워딩으로부터 비롯된
다고 판단을 합니다. 중감위 내부 협의를 거쳐 대상화의 성격이 강한 감사 대상이라는 워딩은 동등한 입장에
서의 피감사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앞으로 보여지는 감사대상이라는 워딩은 전면 피
감사기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제3조 1항의 1호 총학생회 각 단과대학 학생회의 동아리연합회, 2호, 각 단과대학 소속 학과와 학생
회, 3호, 기타납입금의 예산을 사용하는 학생자치기구라고 되어있는데요. 해당 부분 중앙대학교 중앙감사위원
회의 회칙에서는 1호 항목의 교지편집위원회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호 항목에도 기타납입금을 예산
으로 사용하는 합동자치기구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녹지와 중앙문화와 같은 교지편집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학
생회비가 아닌 기타납입금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의 항목과 3호의 항목이 중복되어 나타
나 교지편집위원회라는 내용이 들어간 1호의 항목을 수정하고 3호가 교지편집위원회의 내용을 충족하기 때문
에 별도로 1호에서는 교지편집위원회라는 워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호와 3호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 회칙 제4조에 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지위 섹션입니다. 중감위는 전학대회에서 임시 재정됨에
따라 중운위 특별기구로서 감사 과정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이 부분이 왜 총칙에서 빠졌냐, 이관이 되
었다. 11조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칙에서는 중감위라는 기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 시행 세칙의 총칙이고 중앙감사위원회 회칙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섹션은 별도로 중앙감사위원회를 장으로
뺀서 중앙감사위원회의 섹션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총칙에서 지위를 빼고 제11조로 이관함
으로써 중앙감사위원회의 지위에 대한 설명은 해당 단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정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감사 그리고 소명, 마감, 학생회 단위 영수증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도 만약에 이관을 한다면 감사라는 별도의 장에 이관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정의와 관련된 부
분은 분명 공유하고 있는 개념이 같아야지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
분이 총칙에 들어가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총칙이 아닌 중앙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6조에 감사 대상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원본에서는 교지편집위원회가 1호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해당 사항은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지난 회칙을 좀 많이 읽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면접으로 참석했을 때에 예비 중앙감사위원장으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상당히 지난 회칙을 많이 읽어봤었는데요 그때 감사 대상과 관련해서 중복된 워딩이 지속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파악을 했는데요. 중대한, 수평적 이러한 부분에 대한 워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부분에서 그것이 드러나는지 명확한 규정이 나와있지 않는 한 자의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를 해당 자치기구가 회칙 전반에 잘 스며들고 감사가 동등한 수평적 관계에서의 감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맥락에서의 관점을 가졌습니다. 만약 감사 이전 중 이후를 따져보았을 때 피감사기구와 그런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고 대표자분들께서 판단을 하신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동등한 위치는 무엇이며 수평적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규정을 신설하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도 해당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도 운영규정 상 추가할 생각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7조 중앙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입니다. 운영 규정 관련해서는 제7장으로 이관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운영규정에 대한 정의는 이 정도 같고.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자리와 의결사항이 다른데요. 회칙이 개정되었을 때는 제69조 1항 1호의 전학대회 발의, 중감위의 발의, 그리고 의결시에는 전학대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 그리고 이후 재적 중감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중감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 중감위에서 발의를 하고 중운위에서 의결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발의도 전학대회에서 가능하도록 그리고 의결까지도 전학대회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 중감위 운영규정 같은 경우에는 중감위 회칙을 어떻게 보면 전부가 준수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새롭게 발생하는 수정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업무 및 구성입니다. 제2장 업무 및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에 누구의 업무고 누구의 구성인지가 정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아서 중앙감사위원회를 따로 빼고 중앙감사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과 권한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전에 개정된 회칙에서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4조 감사 계획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은 중감위원장은 회의를 통해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업무를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일정계획표라든지, 감사 대상 및 방법. 여기서 감사 대상을 피감사기구가 아닙니다. 중앙감사위원 명단,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납입금을 예산으로 사용하는 학생자치기구, 이 부분은 오타인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중감위는 감사 시일 7일 전까지 감사 계획을 세운 후 공고한다.

제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최대한 기존의 진행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작성한 사항들이고 감사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를 치르시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정확한 감사기준과 어떤 감사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 상황적인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감사자료와 같은 경우에 포괄적 감사자료나 개별적 감사자료를 나누어서 구성을 했고, 기타 중감위에서 사전에 공고한 자료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기한을 밑에 나와 있고요. 아까 타 대학 사례에서 자료제출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만일 시행을 한다면 중앙대에서는 사본을 제출을 받고자 합니다. 사본을 직접제출을 받고 제가 만약에 일정이 잡히면 직접 학교로 방문해서 매해 피감사기구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는 3년간 보관을 하고요. 총학생회칙에 명시한 회원이 감사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 중감위원 동석 하에 해당 요청에 응한다. 현대 중앙감사위원회실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만약 총학생회장님께서 별도의 공간이 마련이 되신다면 이대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수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감사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생회칙 준수 여부 그리고 감사 시행세칙 준수 여부 그리고 별도

로 봐주셔야 하는 게 감사자료 실재성 구체성 정당성 가독성 요건 충족 또는 증빙서류 구비 여부입니다. 실제적인지 구체적인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가독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정성 준수 여부 이게 뭐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 학우분들에게 경품을 기프티콘으로 전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기프티콘을 전달을 했을 때 기프티콘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 기프티콘, 사용권을 3만원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학우분들께 전달할 때 3만원이라는 학생회 예산 및 비용이 차감이 되는데요. 학생회 예산에서 비용 차감이 되지만 만약에 실제로 받으신 학우분이 없다면 그 예산이 어떤 절차로 사용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프티콘을 전달을 한다면 정말 절차적인 공정성을 가지고 학우분들께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한 증빙 자료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잘못된 구매 행위, 또는 계약(?)의 존재 여부 등이 있다. 기타 감사 관련된 사항은 6호에 다뤄져 있다.

참관인 및 증인으로 넘어간다. 이 부분은 감사 시행에 있어서 지장이 없는 한 참관인의 대면 질의 입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중감위에서 참관인의 입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면 질의 24시간 전까지 피감사기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피감사기구가 참관인의 입회를 요청하는 경우 대면 질의 24시간 전까지 중감위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참관인은 대면 질의 시 발언할 수 없다. 2항, 중감위원장이 감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인을 통해 감사에 필요한 증언을 할 수 있다. 3항, 참관인 또는 증인이 감사의 목적을 훼손하고 대면 질의를 방해하는 경우 중감위는 해당 대상에게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참관인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고, 관련한 참관인이 지켜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이의제기 같은 경우에는 1항, 피감사인은 감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후 7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중감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항, 중감위는 이의제기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결과 처리 및 통보를 완료한다. 2항 1호, 피감사기구의 이의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4장 4절에 의거하여 감사를 시행한다. 2항 2호, 피감사기구의 이의제기를 조건부 승인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수정하여 피감사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2항 3호, 피감사기구의 이의제기를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경우에는 피감사기구에 기각 또는 각하되는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 결과 외의 이의제기는 중감위와 논의하여 진행한다.

이의제기에 대한 부분도 명시했다. 중세칙에 의한 중감위의 모든 공고는 중감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고 각 단과대학 학생회 게시판에 단과대 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A1 사이즈 이상의 공고물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반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당 단대에 대한 여러 개의 공고물을 중감위원이 붙이고 진행하기에 일정상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은 타 대학의 내용을 참고했다. A0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총학생회 플로터가 A1 사이즈이므로 효율성을 위해 변경했다. 추후 변경 조치할 예정이다. 간담회 같은 경우에도 진행하는 것으로 조항을 신설하였다. 감사 결과 보고가 완료된 이후에도 그것에 대한 내용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관련한 질의, 애로사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감위에서도 피감사기구와 함께 간담회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중앙감사위원회의 지위 관련 내용이다. 앞서 원래 중앙대학교 중감위 회칙 총칙 지위에 관련된 부분이 제11조 지위로 옮겨졌다.

중감위 구성원, 제12조이다. 중감위의 구성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 중감위원으로 구성한다. 중감위 부위원장을 새롭게 신설했다. 위원장 부재 시 대표성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부위원장 직책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한 선발 내용도 뒤이어 말씀드린다.

제13조 권한, 중감위는 본 세칙과 운영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 전반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다. 중감위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회계 관련한 부분에서만 감사 권한을 주어야 하고, 학생회비가 계획되고 사업의 내용을 정하는 것에 관여하는 것은 학생자치의 독립성을 훼손한다. 전부 다 감사와 관련된 권한이다. 2항부터 말씀드린다. 2항, 중감위는 교내 모든 단위에 대한 감사권, 감사보호권, 중재권, 소명요청권, 징계권을 갖는다. 3항, 단감위는 중감위의 정기 감사 종료일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닌다. 단, 중감위원장단의 재량 하에 단감위 감사 보고서 제출일을 연장할 수 있다. 4항, 중감

위의 정기 감사가 종료되면 중운위는 즉시 전학대회를 소집하고 중감위는 해당 전학대회에서 최종 감사 보고서를 제출,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이 부분은 감사 결과 보고는 반드시 전체 대표자 앞에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만들었다. 그 자리에서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고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 대표자분들께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수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감사 결과가 투명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별도의 임시 전학대회를 열어 감사가 끝날 무렵에만 전학대회를 여는 것으로 규정에 삽입했다. 앞으로 진행하는 감사는 1회이다. 11월에 감사를 진행할 것이고 개정된 회칙과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진행될 것이다. 2월 경 감사는 다음 년도 학생회 분들께서 위임받아 진행하는 부분이다. 추후 설명 예정이다.

징계 규정이 추가됐다. 급진적이지는 않다.

제14조, 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다. 1항, 중감위는 제2조를 실현하기 위해 올바르게 공정하게 감사를 진행한다. 2항, 중감위는 본 세칙의 개정이 완료되면 공포 후 3일 이내에 피감사기구에 개정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단 선거, 탄핵 등의 이유로 피감사기구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피감사기구에 최신 회칙을 전달하여야 한다. 3항, 중감위는 피감사기구의 권한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감사기구는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권한이 있다. 2. 피감사기구는 각 단위의 회칙을 준수하여 사용한 내역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4항,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고 이전에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5항, 중감위는 피감사기구가 제출한 서류를 제출연도 이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6항, 중감위는 피감사기구에 회계교육을 실시한다. 피감사기구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기존 제11조 업무에 관한 부분은 1호부터 11호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새롭게 개정된 회칙 15조에 편입됐다. 제15조 1항, 중감위원장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행한다. 단, 회의의 소집일은 중감위원장이 정한다. 1호, 예산안 검토. 2호, 단과대학 감사시행세칙 검토. 면접 때 말씀드린 부분, 단과대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사항이다. 각 단과대별로 시행세칙을 신설하겠다. 이 목적은 각 단과대학의 회칙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함이다. 단과대별로 운영되는 회계 방식, 회계 파이가 전부 다르다. 사업의 형태도 다르다. 그런 부분들까지 중감위에서 감안할 수 있어야 한다. 추후 추가 설명 예정이다. 3호,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일정 공고. 4호, 감사자료 검토. 5호,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고. 6호, 특별감사 시행여부 검토. 7호, 기타 감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8호, 기타 중감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 2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기회의 이외에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록도 신설했다. 회의록에 들어갈 내용을 명시했다. 1항 1호, 개회, 휴회와 산회의 일시. 2호, 구성원의 성명 및 출석 여부. 3호, 보고 및 논의 안건. 4호, 기타 안건. 5호, 의사 내용. 6호, 표결 수. 7호, 기타 중감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은 아직 총학생회장께 말한 사항은 아니나 최대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7일 내로 게재하여 공개한다. 단, 중감위원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기타 사항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의결 사항이다. 기존 회칙은 의결만 있는데, 어떤 의결인지 명시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명시했다. 1호,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감사를 받은 회계 관계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체에 손해를 발생하게 됐을 때 부담하는 책임이다. 2호,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 3호,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4호, 재감사에 관한 사항. 5호, 정기감사보고 및 특별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6호, 기타 감사와 관련된 제반사항.

중감위원장 : 의결을 한다면 어떤 사항에 대해 의결하는 것인지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18조 의결, 중감위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참석 중감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동수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은 부결한다. 찬반동수는 기존 제13조에 없었으나 새롭게 추가했다.

파면과 관련된 사안이다. 기존 회칙과 동일하다. 조항의 전반적인 구조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사항만 조금 변경되었다.

직위보장이다. 기존 회칙과 동일하다.

이의제기는 제8조와 제5장으로 이관했다. 5장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재감사 진행이다. '마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단, 사건의 경위를 바꾸는 증거가 발견 또는 접수된 경우 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말로 회칙에 들어가는 게 맞나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쳤고 필요하다면 운영규칙에 넣겠다.

재정은 삭제하였다. 중감위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중감위는 예산을 감사하는 기구지 예산을 사용하는 기구가 아니다. 부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의를 거쳐서 교비지원을 받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다. 별도의 학생회비 예산을 가지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중감위 예산 사용에 대해 중감위가 감사할 수 없다.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면 중감위 재정이 딱히 필요하지 않다.

제2절로 넘어가겠다. 중앙감사위원장에 대한 부분이다. 위원장이 있었던 기존과 다르게 부위원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일컬어 중앙감사위원장단으로 명시했다.

제21조 구성은 중앙감사위원장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말씀드리는 사항이다. 지위와 같은 부분은 읽어드리겠다. 중감위원장은 중감위를 대표하며, 중감위에서 진행하는 모든 감사를 총괄한다. 중감위원장은 중감위를 대표하며, 중감위에서 진행하는 모든 감사를 총괄한다. 2항, 중감부위원장은 중감위원장을 보좌하며, 중감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권한을 대신한다. 3항 중감위원장단이 궐위시 중감위원 중에서 중감위의 의결로 선출된 자가 제 23조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도 명시하고 있다. 사실, 이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중감위원장이 궐위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감위원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장단이 동시에 사퇴하면 해당 직위를 권한 대행하는 것을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고, 23조에 권한 대행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네, 1항 권한대행은 중감위원장단 궐위로 인해 공석이거나 다음 대 위원장이 12월 1일까지 선출되지 못하였을 경우 선출된다. 2항 권한대행은 선출된 중감위원 중 한 명이 맡아야 한다. 3항 권한대행은 총 선출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2인 이상 후보가 나온 경우 과반 득표자가 선출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4항 권한대행은 회칙 제 24조 10항에 의거하는 경우, 제 24조 10항을 읽겠다. 중감위원장단의 유고 및 사퇴 시 잔여 임기가 100일 이상일 경우, 30일 이내에 제 24조에 따라 중감위원장단을 선출하되, 날짜와 기간은 필요에 맞게 중감위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단, 이 경우 24조 2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24조 2항의 내용은 최초 공개 모집 시에 2인 1팀으로 구성하여 러닝메이트 형태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도 모집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예를 들어 한 명이 그 만두고, 위원장이 공석이고 부위원장만 있을 때 러닝메이트로 팀을 뽑을 수가 없다. 실제 뽑아야 하는 인원은 1명인데 지원해야 하는 인원은 2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중간에 뽑는 경우, 제 24조 2항의 러닝메이트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점을 명시한 것이고, 23조로 돌아와서 5항을 읽겠다. 5항 권한대행은 회칙 제 22조의, 중앙감사위원장단의 지위에 의거해 중감위원장과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 단, 임무와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고, 중감위의 의결을 통해서만 임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6항 권한대행은 새로운 중감위원장단이 선출될 시, 기존 권한을 잃고 위원회 자리로 돌아간다는 내용이다. 기존 회칙과 선발 사항에서는 큰 변화는 없다. 부위원장이 추가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큰 변화는 없고, 이번 개정에서 선출과 관련된 내용은 최대한 유지하는 쪽으로 개정을 실시했다.

제 24조, 새롭게 바뀐 24조 선발입니다. 1항 중감위원장단은 공개모집을 해야 하며, 중감위의 의결을 통해 선발한다. 단,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재학생 중에서 선발해야 하며, 피 감사기구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자는 중감위원장단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2항 중감위원장단은 최초 공개 모집 시에 2인 1팀으로 구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3항 중감위원장단은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기존과 동일하다. 4항 모집 공고 2주전까지 선발일정공고와 사퇴사유서 양식을 온라인으로 업로드 해야 한다. 이 부분도 동일하다. 5항 해당 단위에 직책

을 맡고 있는 자가 중감위원장단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모집마감 7일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6항 10월의 첫 평일에 다음 대 중감위원장단 모집 공고를 내야 한다. 7항 최초 모집은 15일간 진행한다. 만약 모집기간 내에 중감위원장단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7일 내로 추가모집을 공고한다. 추가모집의 경우 중운위와 상의 하에 기간을 결정하도록 한다. 8항 중운위는 매년 12월 이내로 위원장을 선발하여야 하며, 선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명문화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9항 중감위원장단의 선발 결과는 온, 오프라인으로 공고한다. 10항은 아까 설명을 했다.

25조 임기로 넘어가겠다. 중감위원장단의 임기는 선발 이후 다음 년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24조 8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 내용이 뭐냐면 기존 회칙에는 위원장의 임기는 선발 이후 다음 년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 경에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2022년 11월 30일까지 중감위원장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24조 8항 최초 모집으로 선발된 중감위원장단의 임기 같은 경우는 다음 년도 11월 30일이 맞지만, 중도에 선발된 인원 같은 경우에는 다음 년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넣어두었다. 의무와 관련된 부분 제 22조 같은 경우엔 앞서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삭제했고 제 3절 중앙감사위원회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위 제 26조 지위 1항 중감위원은 중감위의 구성원이 된다. 2항 중감위원은 피감사기구에서 직책을 맡을 수 없다. 3항 중감위원은 서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기존의 회칙과 동일한 내용이다. 그리고 제 3절 제 27조이다. 따로 위원선발의결기구라는 명시를 두었다. 회칙 상 이해하다보면 헷갈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단위에서 의결을 해서 선발이 되는지 정확하게 명시했다. 기존 제 24조 선발 회칙내용에서는 해당단위 소속의 재학생 중 한 명을 운영위원회 이상의 기구에서 의결로 선발한다. 단, 총학생회 교지편집위원회의 경우 재학생 중 한 명씩 내부의결로 선발로 선발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위원을 선발하는 의결기구에 대해서 위원선발의결기구라는 별도의 기구라는 워딩을 사용하여 명시하였다.

제 28조 선발입니다. 중앙감사위원장단은 선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감위원 지원자를 모집하는 공고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2항 중감위원장단은 중감위원자를 모집하는 공고문을 공고한 날로부터 매 감사기간을 제외하고 상시로 중감위원을 모집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조금 변경되는 사항이다. 중감위원 모집을 상시로 받는다. 지금 현재 중감위원이 초반에 비해 상당히 인원이 줄었는데 이대로 감사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언제 나갈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시 모집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다. 관련하여 어떻게 뽑느냐 중감위에서 자율적으로 아예 뽑고 유지를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상시모집을 하더라도 기존과 같이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거쳐야만 중감위원으로 인정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드린다. 3항 읽어드리겠다. 중감위원장단은 중감위원회에 한해 대해 단위별로 1명씩 선발하여 구성하고, 단위별로 1명씩 구성이 되는게 맞다. 감사를 진행하는데 최초 편제이다. 해당 단위의 위원선발의 의결기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위원선발 의결기구에 대한 설명이다. 단 중감위원장단은 선발한 중감위원회 명단을 선발완료일로부터 1일이내에 각 단위의 위원선발 의결기구로 전달해야하며 위원선발 의결기구는 명단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승인여부를 중감위원장단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5항 위원선발 의결기구가위원후보자의 선발에 대해 승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중감위원장단에게 전달한다. 이때 해당 위원 후보자는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해 위원선발의결기구에 소명할 기회를 갖는다. 명백한 결격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의결을 통해 뽑지 않고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다.

몇 개 설명을 드렸고 제 29조 임기인데, 중감위원장단의 임기와 동일하게 중앙감사위원회도 적용 된다는 점 명시하였다. 마찬가지로 기존 회칙 제25조 임기같은 경우 다음 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만약 이 회칙 그대로 갔으면 상반기에 선발하는 중앙감사위원회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업무를 진행해야한다는 점이다. 중감위원에 대한 의무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선 의무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당연히 이루어져야하는 부분이다. 각 단위의 특수성과 자치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순히 이런 워딩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중요한건 각 단위의 특수성과 자치성을 어떻게 보장할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게 실질적이라고

생각한다. 단과대학 감사시행세칙을 만들어서 각 단위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보면 “각 단위에서 어떤 사업을 이렇게 실행이 되어서 감사간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에 대해 충분히 듣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지 각 단위의 특수성과 자치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워딩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당연히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효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3장 단과대 감사위원회로 넘어가겠다.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 하나한 설명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어서 최대한 간결하게 말씀드린다. 1절 일반이다.

제30조 구성 제 단과대학감사위원회는 즉 단감위라고 하겠다. 단과대감사위원장 단감위원장과 단과대감사위원 단감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성 1장이다. 중감위는 단과대학 정기감사 시행일 31일 전까지 해당 단과대학에 소속된 중감위원을 단감위원장 후보로 지정하여야 하며 단감위원장 후보는 해당 단과대학운영위원회 이하 단운위에서 인준을 통해 선출한다. 2항 중감위는 해당 단과대학에 소속된 중감위원이 꺾워 시에 한하여 해당 단과대학에 소속되지 않은 중감위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이 때 단감위원장은 단과대를 중복하여 겸임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중감위원 분들은 단과대학이 정해져 있다. 제가 속한 사과대, 어떤 분은 인문대, 어떤 분은 공대, 총학생회이실거고, 그런 식으로 다 단과대가 정해져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해당 단과대학에 소속된 중감위원장 한 명을 단과대 감사위원장 후보로 지정을 한다는 말씀이다. 그 분이 파견이 돼서 단과대 안에서 감사 위원장을 맡는 구조이다. 해당 감사 위원장 후보는 해당 단과대학운영위원회, 단운위에서 인준을 받아 선출이 된다. 중감위는 해당 단과대에 소속된 (?)행하여, 파견할 수 있는데, 중복해서 겸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현재는 정해져 있지만, 모든 단과대학에 중감위원 한분씩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현재 단과대 수에 비해서 중감위원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감위원의 수가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단감위원장은 단과대를 중복하여 겸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사과대 중감위원장이 사과대 단감위원장을 하면서 동시에 공대 단감위원장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말씀이다. 물론 편제가 충족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넣어두었다. 3항이다. 중감위는 선출된 단감위원장을 파견하고 단감위원장은 선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감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단감위원은 각 단과대학 및 학과의 학생회에서 추천되는 정원 1인과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된 해당 단과대학 소속 재학생 최대 2인으로 구성된다. 단, 해당 단과대학 소속 재학생의 학과부는 중복될 수 없다. 우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과대 감사 위원회가 해당 단과대 사무국장, 사무국장이 파견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단과대에 학생회 인원 1명, 그리고 해당 단과대에 소속된 학과부의 학생회 인원 각 1명으로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 이다. 이 부분은 감시의 측면도 있다. 저희가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학생회 분들과 함께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학생회 인원 1분께서 오셔서, 본인이 본인 단위, 예를 들어 제가 도시계획부동산 학과라고 했을 때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때는 도시과 학생회 인원은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 것과 같이 본인과의 감사만 지양하는 형태로 감사를 할 예정이고, 재학생의 최대 2인이 된다는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의 역할로서 재학생 분들께서 인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 하에 온전히 학생회 인원만으로 구성하지는 않았다. 중감위원인 1명 그리고 학생회 인원 여러 명, 재학생 최대 2명까지 해서 최대한 투명성을 여러 측면에서 보장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재학생 최대 2인까지도 구성 인원에 포함을 시켰다.

32조 단과대 감사위원장이다. 단과대 감사위원장은 중감위 한명으로 파견이 되고, 감사권 및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제가 사과대 단감위원장인데, 제가 속한 도시계획 부동산 학과에 대해서는 의결권과, 감사권을 갖지 아니한다 라는 이야기이다. 회의 중립의 의무에 입각하여 모든 의결사항에 대하여 기권을 행사한다. 라는 말이다. 중감위원장 단은 단감위원장이 될 수 없다. 단과대 감사위원이다. 본인 소속 단위에 대하여 감사권 및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며 회의 중립 의무에 입각하여 모든 의결사항에 대하여 기권을 행사한다. 마찬가지로 본인 단위에 대해서는 의결권, 감사권 모두 없다는 이야기 이고, 타 단위, 다른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과 감사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해주기 바란다. 단감위원장 및 단감위원의 임기는 해당 정기 감사 시행일로부터 재감사를 포함한 감사일정을 모두 완료하는 그때까지로 한다.

제 35조 권한이다. 단감위의 권한은 해당 단과대학의 감사에 한하여 제 13조에 준한다 라는 내용이다.

13조에 전반적인 권한에 대해서 중앙감사위원회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총칙에서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중앙감사위원회 장에서 그 권한을 말씀을 드렸고 해당 권한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이야기다. 단, 각 단과대학 감사시행세칙과 본 세칙이 다를 때에는 단과대학 감사시행세칙에 따른다는 말이다. 최대한 단대의 입장, 그리고 단대의 상황을 고려하여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판단하였기 때문에 단과대학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는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제36조 의결의 위임이다. 만약에 단감위가 중대한 특정 사안에 대해 중감위의 의결을 위임하기로 한 경우, 중감위원장은 48시간 이내에 임시 회의를 소집해 위임된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는 내용이다. 결과 및 공고다.

제37조 단감위원장 결과 처리가 완료된 직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중감위에 보고 후 피감사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 후 단감위는 72시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고한다. 단, 이의 제기 또는 재감사로 공고기간을 초과할 경우, 이의제기 또는 재감사의 결과처리 및 통보를 완료한 후, 감사결과를, 결과보고서를 공고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항, 제3장 감사 대상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앞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감사 대상을 피감사기구로 워딩을 전부 변경을 하고 피감사기구가 지녀야하는 당연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선 조항에서 언급을 했지만 그런 조항들 위에 구조적인 맥락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피감사기구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제4장 감사로 넘어가겠다.

제1절 1번 제38조 증빙서류에 관한 내용이다. 영수증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표시를 했고, 이 부분은 1호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구매 영수증, 단위 영수증, 기타 중감위 의결을 통해 인정된 자료로 명시가 되어 있다. 감사기준과 관련된 부분도 총칙의 제6조에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해당 부분들은 좀 더 감사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존의 감사기준이 조금 많이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다. 제출기한 준수 여부, 제출서류 완성도 및 신빙성, 제출서류가 얼마만큼 완성이 됐는지. 사실 단감위 구성 이전에 단감위원 한 분께서 주관적인 기준이 개입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렇다면 단과대별로 감사 기준이 제각기 다를 것이고 그것이 또 단과대학에 (서버 불안정) 감사를 하느니만 못하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감사기준은 해당규정을 옮겨서, 총칙 제6조로 옮겨서 조금 더 구체화하였다는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참관인에 대한 부분도 앞서 언급을 드렸다. 제32조 감사결과 공고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개정된 세칙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또 제33조 감사이의제기, 이의제기에 대한 부분도 제8조에서 말씀을 드렸다. 이의제기에 대한 마감 내용이고, 있을 경우에 의결을 즉시 감사 마감하고, 없을 경우에는 이의제기가 끝난 이후 즉시 감사 마감을 한다. 이 부분도 다 포괄시켜서 이의제기 항목에 개정을 했다. 공고 내용, 이 부분도 정확하게 서류 제출 여부, 회칙 준수 여부, 허위기재 여부,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표시가 되어있어서 최대한 개정된 세칙 내용에 별도로 구분을 하는 쪽으로 파악했다,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말이다. 그리고 넘어가서, 정기감사로 넘어가면, 이 정기감사는 앞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는, 지금 현재 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전년도 학생회에 대한 자료를 현재 단위가 그 자료를 증빙해야 하는 의무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전년도 감사는 전년도에 해야 하고, 현재년도 감사는 현재에 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감사는 당해년도에 대해 이뤄진다. 당해년도 학생회가 쓴 예산과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감사 진행이 되고, 마찬가지로 상반기 감사는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 감사 때 해당년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해당년도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을 하고 앞으로는 전년도에 대한 감사는 그 년도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정기감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각각 31일간 시행한다. 단, 중감위원장이 감사과정에서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장 사유를 공고한 후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 연장할 수 있다. 2항이다. 상반기 감사 시행은 매년 5월 두 번째 월요일, 하반기 감사 시행일은 매년 11월 첫 번째 월요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5월 첫 번째 월요일에 실시를 할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시험기간에 따라서 각자 5월 첫 번째 주에 시험이 종료되는 분들도 계열 것이라 생각이 들어 가급적 그 다음주인 두 번째 월요일로 잡았고, (하반기는) 선거 이후 12월 초경에 모두 학생회비 위임이 완료되기 때문에 11월 첫 번째 주로 잡고 진행을 하였다. 31일간이기 때문에 11월 두 번째 주로 하면 자칫 기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11월은 첫 번째 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공휴일인 경우, 그날 이후에 가장 가까운 평일에 시행을 한다. 3항 정기감사는 중앙감사와 단과대학감사로 나누어 시행을 한

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다. 4항 중감위원과 피감사기구 중감위원장 전원에 대해 당일 출석해야 한다. 출석요구시킨 6시간 이전에 중감위원장에게 불참사실과 합당한 사유를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항 피감사기구의 과반수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일정을 다시 잡고 감사를 실시하되 전항의 불참 사실과 합당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7조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징계 사항에 관해서는 잠시후 언급을 드리겠다. 그래서 관련한 감사 제반사항에 대한 내용이고, 6항 감사는 중감위원장단이 중감위원의 주도 하에 대면질의를 기본으로 하여 진행하며 중감위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질의로도 진행을 한다. 아무래도 복사본을 제출 받다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감사를 진행을 해서 투명하게끔 감사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대면질의 같은 경우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한 사항이 있을 것 같다. 2학기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5인 이상 규제도 있고 하지만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최대한 지금 상황을 고려해서 서면질의로도 진행을 할 생각 중에 있고 가급적이면 5인 이상은 모이지 않도록 생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단과대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한 단과대에 5명은 당연히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단과대감사위원장, 단과대감사위원, 각 단과대 및 각 단과대에 소속된 학과/부 학생회 인원, 그리고 최대 지원자 2인까지 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다. 기존의 감사 방법과 다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 큰 차이는 없지만 28일이 31일로 바뀌고 또 제출 관련해서도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다 추가를 해서 명시를 했고 관련해서 만약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나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전체적인 내용을 회칙에다가 기입을 하고 중앙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면 전체적인 회칙에 대한 부가 설명, 추가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이나 그 외 제반 사항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 규정에서 충분히 기입을 할 예정이다.

제40조 중앙감사다. 중앙감사는 중감위원장단이 주도하여 시행한다. 중앙감사위원회의 피감사기구는 다음과 같다.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교지편집위원회 등.

제41조 단과대학 감사다. 단과대학감사는 단과대학감사위원장이 주도하여 시행한다. 단과대학감사의 피감사기구는 각 단과대학 학생회, 각 단과대학 소속 학과/부 학생회이다.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앞서 감사자료에서 설명을 드렸고 증빙서류도 제38조에서 설명을 드렸다. 결과보고에 대한 내용이다. 이 부분을 기존에는 전학대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는 전학대회에서 감사 결과를 보고할 수 없게 되었다. 전학대회 일정과 감사 종료 시점이 맞지 않으면 전학대회 때 감사 결과 보고를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임시 전학대회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실 왜 그럼 일정이 안 맞게 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년도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일정을 맞춰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현재년도 감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명확히 5월에 진행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단위별로 5월 언제 끝날지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있었다. 그래서 단과대 사정을 최대한 고려해서 31일의 기한 동안에도 어떤 단과대는 31일 중에서 어떤 날짜에, 또 어떤 단과대는 어떤 날짜에 끝나는 것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시 전학대회를 열어서 감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제3절 이월금 감사다. 이월금 감사의 목적은 하반기 정기감사 이후부터 학생회비를 이월하는 동안에 감사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함이다. 피감사기구는 다음 같다. 총학생회, 각 단과대학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각 단과대학 소속 학과/부 학생회, 기타 납입금을 사용하는 교지편집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월금 감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거냐는 뒤이어 설명 드리겠다. 제43조 감사계획 및 방법이다. 감사대상, 여기서 말하는 감사대상은 피감사대상이 아니다. 감사대상은 하반기 정기감사 범위 이후부터 하반기 정기감사가 끝난 이후, 그러니까 하반기 정기감사 이후가 아니라 하반기 정기감사에서 다뤘던 내용 이후부터 12월 1일 이전까지 기간에 대한 학생회비 사용내역과 학생회비 이월에 대한 모든 사항으로 한다는 것이다. 제가 이번 상반기 감사 때에는 위원장으로 선출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감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나, 충분히 이월금 관련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판단이 든다. 가장 사각지대에 있고, 이월이 제대로 되었는지가 확실해져야 앞으로 학생회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월금 감사는 별도로 추가하여 시행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18시까지 완료하되, 피감사기구의 감사자료 제출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 처리를 완료한다. 3항 감사방법은 중감위원장단이 중감위원의 주도하에 서면질의를 기본으로 하여 진행한다. 단, 중감위에서 대면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피감사기구의 출석일로부터 24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 읽고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다. 4항 제42조 3항에 의거하여

중감위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다시, 3항이 아니라 42조 2항이다. 2항으로 이 부분은 수정하겠다. 42조 2항에 의거하여 중감위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피감사기구(중감위에서 요구한 전원이 당일 출석해야 한다, 단, 출석요구시한의 6시간 전에 중감위에 불참 사실과 합당한 사유를 알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항 피감사기구의 과반수 출석하지 않으면 일정을 다시 잡고 감사를 실시하되, 전항의 불참사실과 합당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는 제57조, 제57조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 드리겠다, 제57조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예외 사항일 경우, 피감사기구는 중감위와 협의하여 관련 사항들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우선 이월금감사는 해당년도 중감위에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년도 중감위에서 진행을 하고, 해당년도 중감위 임기가 11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다음년도 3대 중감위원회에서, 중앙감사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감사주체는 다음년도 중감위인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12월에 진행을 하는 거면 다른 단과대 학생회나 단과대 소속 학과/부 학생회나 총학생회와 같이 모든 단위가 임기가 끝나면 무렵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전년도에 피감사기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게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해당년도에 감사를 진행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을 텐데 전년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그러한 이유를 안했는데, 해당년도 감사를 진행하는데 왜 이월금감사만 이렇게 전년도 감사 피감사기구를 조사를 하냐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중앙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좀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11월말에 이제 선거가 완료가 되고, 인수인계가 진행이 될 텐데 인수인계할 때 회계 관련된 부분을 외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다음연도 담당자가 사인을 해서 인계가 확실하게 완료되었음을 밝혀야 한다. 이와 같이 회계와 관련된 회계 감사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전년도 학생회 담당자에게 다음년도 학생회 담당자 인계를 받고 다음년도 학생회 담당자가 피감사기구의 감사담당자가 되는 것이다. 전년도 담당자가 감사를 맡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최대한 없도록 다음연도 학생회에게 그 책임 소지를 분명하게 하겠다.

제44조 감사자료 제출이다. 1항 피감사기구와 학생회비 이월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이월을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2항 이월금감사 전 이월을 완료한 단위는 학생회비 이월에 관한 모든 자료를 중감위가 제시한 기간 이내에 제출한다.

제45조 감사 결과 보고 중감위는 해당 단위의 감사를 제43조에 명시된 방법에 의거하여 진행하고 결과처리가 완료된 직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감사기구에 통보하여야한다. 통보 후 중감위는 72시간 이내에 감사보고결과보고서를 공고한다. 단, 이의제기 또는 재감사로 인해 공고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의제기 또는 재감사의 결과처리 및 통보를 완료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고한다. 제46조이다. 이월금감사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들은 제1장을 따른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총칙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이월금감사 또한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특별감사로 넘어가겠다. 특별감사는 기존 회칙과 맥락이 비슷하다. 비슷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관련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항의 구조적인 개편에 따라서 41조였던 것들이 48조로 변경되고 하는 것이 주다. 제50조에 특별감사의 시행 및 방법과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정기, 이월금 감사의 규정에 준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기존 제43조와 같이 해당 사건에 대한 예/결산안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받는다와라는 너무 구체적인 규정이 아닌, 그 규정들을 전부 포괄할 수 있는 정규 규칙에 준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기존 제43조1항2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감사 과정이 정기 이월금 감사의 규정에 준하며 정기 이월금 감사의 규정을 구체화한다. 기존 회칙 44조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개정된 회칙 50조로 통합을 했다. 기존 회칙 제45조 마감 공고와 관련해서는 앞서 결과를 공고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모든 공고에 대해서 공고한다는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비밀 보장은 동일하게 유지를 했다. 기존에 제46조였던 것이 51조로 변경된 것 이외에는 없다. 제4절 재감사이다. 재감사도 특별 감사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회칙과 내용은 상당히 동일하다. 기존 회칙 제50조와 개정 회칙 제55조를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물론 관련 공고에 대한 조항은 48조와 53조 각각 다르고 감사 요건에 대한 항목에 대한 조항의 숫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뀌었다. 피감사 기구에 통보하여야된다는 감사를 실시하고 피감사기구에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넣었다. 감사는 통보된 날로부터 3일간 진행한다. 단 중감위원장이 감사 과정에 있어 제55조1항의2호입니다. 감사 과정에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연장 사유를 공고한 후 1회에 한하여 최대 15일 연장할 수 있다. 1항의3호 재감사의 시행 및 방법과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정기, 이월금 감사의 규정에 준한다. 라고 공시가 되어있다. 기

존의 재감사보다 좀 더 구체화함으로써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성했다. 마찬가지로 제출 서류와 관련해서는 앞서 같이 정기 이월금 감사의 규정에 준한다는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감사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제51조 제출 서류와 관련된 조항은 삭제되었다. 이 공고도 마찬가지로 앞서 공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52조도 삭제하였다.

제53조 기존 회칙 비밀보장은 개정회칙56조 비밀 보장으로 숫자만 변경되었다. 기존 회칙 제5장 권한대행. 권한 대행에 대한 내용은 중앙감사위원회 장에 권한 대행 섹션을 별도로 구분해서 이 내용을 명시할 하였다. 이 조항은 제23조 개정된 회칙의23조를 참고하면된다. 내용이 거의 다 끝이 났다. 징계 및 이의제기이다. 제1절 징계.

제57조 목적. 징계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본 세칙에서 규정하는 바에 어긋나거나 부정한 행위로 제2조에 명시된 본 회의 궁극적인 목적의 달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정의 기회와 반성의 계기를 마련하여 이후 보다 발전적이고 책임감 있는 학생 자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호. 감사시행 결과에 따라 본 세칙에 기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시정이 필요한 예산 운용을 바로잡고 사전 예방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회계 운영에서 비롯된 신뢰로운 학생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징계의 전반적인 목적이다. 다음은 징계 사유이다. 어떠한 경우에 징계를 처분할 수 있는가.

제58조 징계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중감위는 피감사기구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1호 감사자료 제58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중감위는 피감사기구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호 감사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미비했을 경우 내용의 미비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중앙감사위원회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야한다. 어떠한 형태의 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 수차례의 교육을 통해 계속해서 전달되어야할 것이다. 2호 피감사기구가 대면질의6시간 전까지 중감위에불참사실과 합당한 사유를 알리지 않고 대면질의에 불응 또는 불참했을 경우. 3호 감사에 있어서 예산안과 결산내역의 오차에 대한 소명이 부실한 경우4호 사업의 예산 집행이 학생회칙에 어긋났을 경우5호 정당한 사유 없이 예산안의 제출기한을 어긴경우6호 고의로 감사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하는 경우7호 예·결산안 내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8호 회칙 상 운영비 또는 이월금 비율을 준수하지않은 경우9호 기타 본 세칙에 위배되어 중감위에서 징계의사유로 판단되는 부분이 발생한 경우 이월금 비율 관련해서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 하겠다. 징계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상황 설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책임과 무관하게 징계받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다. 징계 내용에 구체적으로 나온다. 징계는 사유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적용한다. 단, 다음 각 호 이외의 추가적인 징계가필요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추가 징계 안건을 상정하고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1. 중감위가 의결하여 정한 유예기간 동안 문제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하는 경우 처분하는‘시정권고’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하는‘주의’가. 수정요청 및 시정권고 처분 받은 사항에 대해유예기간 내에 시정하지 못한 경우추가 설명시정 권고를 내리면 해당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해야한다. 시정을 하지 않으면 추가 징계가 내려진다. 나. 시정여부와 관계없이 시정권고가 이루어진 항목이10개인 경우 감사를 진행하면 감사 관련 내용을 볼 때, 무엇이 올바르게 못한지 다 체크를 한다. 그러한 항목들이10개인 경우부터 주의를 내린다. 다. 나 혹은 다 목에서 주의를 받았음에도 추가로5개 항목에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이다. 대면 질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단과대 예시를 들면 단과대 감사 위원들이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위원들이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 피감사 기구에서 또 다섯개 항목에서 시정 권고를 받으면 주의를 준다. 어떤 부분이 틀린지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추가 주의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어떠한 부분을 수정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 주의를 한다는 것이다. 라. 중감위원장이 출석을 요구한 인원의1/2 미만인 합당한 사유를 알리지 않고 불참한 경우 이 부분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일정을 조율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무단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마. 경미한 문제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 부분은 중감위원회가 판단하는 내용이다. 주관적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운영 규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겠다. 3호이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하는‘경고’, 경고 처분이2회 축적되는 경우 피감사기구 소속대표자가 ‘사과문’을 작성하여 중감위와 피감사기구 소속대표자가 학생들에게 공고한다. 주의 처분이3회 축적되는 경우 경고1회이다. 가. 주의 처분이3회 축적되는 경우 나. 중감위원장이 출석을 요구한 인원의1/2이상인 합당한 사유를 알리지 않고 불참한 경우다.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하는 경우 4. 피감사기구의 일원이 부당하게 예산을 사

용하여 그 일원이 소속한 학생자치기구에 물질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액 전액에 대하여 감사결과가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피해보상청구' 승실대 사례에서 가져온 내용이다. 물질적으로 횡령을 하거나 사적 이용을 할 때는 차후의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외로 생각해도 될 것 같다. 학생 자치 회부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뺐다. 최대 징계 수위는 사과문 작성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제60조 징계의 의결이다. 1항 징계의 의결은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별도 의 의결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항은 잘못된 것 같아서 추가로 수정을 하고 말씀드리겠다. 2항 제58조 제1호는 재적 중감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참석 중감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제58조의 단서조항 및 동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이 부분도 60조에 대한 내용은 조항이 추가되면서 근거 조항이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숫자만 수정하고 다시 말씀드리겠다. 죄송하다. 제61조 징계의 효력 발생이다. 징계의 효력은 제59조에 의거하여 의결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즉시 발생한다. 라고 되어있다. 이 내용도 59조가 아니다. 수정하겠다 앞 부분에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은 수정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

제2절 이의제기 제62조 이의제기 방식이다. 1항 감사와 관련된 이의제기는 각 피감사기구의 책 임자만 할 수 있다. 2항 피감사기구 책임자는 중감위원장으로부터 작성 양식을 교부 받아 이의제기를 제출하여야 한다. 3항 감사 기구로부터 이의제기가 제출되면, 해당 이의제기가 수용 또는 기각될 때까지 해당 징계는 일시적으로 보류된다. 징계 관련한 내용 이외에 이의제기 방식을 추가해서 넣었다. 구체적으로 이의 제기와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자 섹션을 추가하였다.

제63조 이의제기 처리이다. 1항 피감사기구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중감 위원장단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 하여 처리한다. 2 항 이의제기 처리는 중감위 재적 인원 과반수 출 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개정으로 넘어가겠다.

제64조 중앙대학교 감사시행세칙 개정위원회이다. 1항 중앙대학교 감사시행세칙 개정위원회(이하 개정위)는 중감위원장단 및 중운위로 구성된다. 2항 개정위의 위원장은 중감위원장이 맡으며, 개정 발의가 필요할 시 개정위를 소집할 수 있다. 이번처럼 제가 요청드릴 수 있다. 3항 본 세칙의 개정 발의는 개정위 구성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전 학대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65조 중앙대학교 감사시행세칙 개정이다. 본 세칙의 개정은 개정위에서 개정안을 발의하여 전학대회에서 승인을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발의가 되고 전학대회 안건으로 상정이 되면 그때 승인을 통해서 개정이 된다는 내용이다.

제 66조 중앙대학교 단과대학 시행세칙 개정 위원회, 1항 이하 단과대학 개정위는 중감위원장단과 개정 시기 반감위원장 단운위로 구성이 된다. 단운위는 아까 말했던 단과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그리고 과 학생회장 부회장을 말한다. 2항 단과대 개정위 위원장은 중감위원장이 맡으며 개정 발의가 필요할시 단과대학 개정위를 소집할 수 있다. 중앙대학교 단과대학 감사 시행세칙 개정 발의는 단과대학 개정위 구성위 2/3 참석과 참석인원 2/3의 찬성을 통해 단과대 학생대표자 회의 단학 대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제 67조 개정. 중앙대학교 감사위원회 시행세칙 개정 관련해서 개정은 단과대학 개정위에서 개정안을 발의하여 단과대학 승인을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마찬가지로 단과대학 개정위에서 개정안 발의가 이뤄지면 단학대회 안건으로 상정이 되면 단과대 대표자분들의 승인을 통해서 성립이 된다는 말이다. 제 7장 2 중앙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이다.

제68조 중감위는 본 세칙을 근거로 하여 중감위의 운영과 구체적인 감사기준 및 감사에 활용되는 양식 등에 대해 따로 정하며 이를 중앙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69조 중앙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의 재정안 개정은 다음 각 호 하나에 의해 발의한다. 아까 설명한 내용인데, 전학대회 발의도 되고 전학대회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과 중감위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짐.

마지막으로 규칙 봄. 본 회칙은 2019년 5월 30일 제정이 되었고 2019년 12월 1일까지 시행한다. 단 2020년 7월 31일까지는 본 세칙 7장에서 말한 중앙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시기로 규정하며 감사업무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다. 개정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서 앞서 설명했고, 만약 개정이 되면 제72조를 고려해서 개정일 및 시행일은 202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묵시한다. 이상이다. 아까 잘못된 조항과 관련해서는 확인해야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휴게하면 확인하겠음. 이상이다.

총: 수고 많았음. 중운위분들도 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질의를 정리해야하기 때문에 10분 드리도록 하겠음. 9시 10분까지 휴게 받도록 하겠다.

중감위원장: 죄송합니다. 1항 "징계의 의결은 제 20조 제 2항에 의거하여 별도의 의결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란 2항 "제 58조 제 1호는 재적 중감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참석 중감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제 58조 단서 조항 및 동조 제 2호부터 4호까지는 재적 중감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참석 중감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단, 피감사기구 담당 중감위원에 대한 의결권은 제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총: 감사드린다. 질의하실 대표자 있으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인문.정: 의사 진행 발언이다. 개정안 세부 내용이 32쪽으로 매우 많아 산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점 우려되어 표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 이루어지는 것 어떨가.

총: 대표자분들 질의가 많은 것 같다. 그렇다면 제 1장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다. 제 1장에 대한 질의 부탁드립니다.

부총: 질의보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바이다. 회칙으로 되어 있던 걸 세칙으로 바꾼 점은 좋다고 생각한다. 중감위원회가 회원을 보유하는 단체가 아니고 총학생회원의 권리를 위하여 감사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잘 바꿨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에서도 회칙 등의 표현이 아닌 기구, 위원회, 세칙으로 용어 변경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

중감위원장: 해당 내용 확인하였고 워딩 수정하겠다.

총: 제 1장 총칙에 대하여 질문 있으신 대표자분들 말씀해달라.

없는 것으로 하고 제 1장 밑에 4,5,6조에 대해서도 질의가 없으신 것인지.

부총이 말씀해주신 건 1조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밑에 조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다면 해달라.

부총: 5조에 대한 질의가 있어 그 전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하겠다.

총: 2,3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 질의해달라

인문.정: 원안에서 제 6조 감사대상에 4항에 있던 감사대상과 중감위원의 관계는 수평적이며 중감위는 감사대상의 회계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구조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아예 삭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회칙은 수평적인 관계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명확히 회칙에 명시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아예 삭제된 것인지 궁금하다.

중감위원장: 우선 지난 제 6조의 수평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주셨는데 구조적인 맥락에서 말씀 드리긴 했으나 단과대 시행 세칙이라든지 감사 대상에 대한 워딩을 피감사기구로 변경하던 중 앞으로 나아가야할 부분이나 전반적인 맥락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운영 규정에 추가할 것을 고려중이다. 워딩으로써도 사용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라는 생각이 들어 어떤 조항에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개정안에 반영하

도록 하겠다.

총: 개정안 2조, 3조, 그리고 원안 제 6조까지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부총: 5조에 대한 질의드리겠다. 일단 1항에 집행부원, 아 질의가 여러개라 다른 분들부터 해달라.

총: 사과대 회장님 발언해달라.

인문.정: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4항에 수평적이며 회계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이 회칙에 명확히 명시되었으면 하는 것이 사과대의 의견이다.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개정이 이루어질지 몰라 사회과학대학 단운위에서는 제 6조에 감사 대상 간 지위에 대한 명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감사대상에게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감사를 진행하는 내용도 추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중감위원장: 말씀해주신 수평적인 측면, 관련되지 않은 부분 관련하여 회칙 상 명확히 명시될 수 있도록 검토 후 기입하겠다. 감사대상의 지위에 대한 명시는 "감사대상에게 동일한 기준과 감사를 적용하게" 부터 잘 못들었는데 다시 설명 부탁한다.

인문.정: 단운위에서는 감사 대상에게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감사를 적용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해줬으면 하는 의견이다.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제 5조 감사 자료 부분에서 사본을 직접 제출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셨으나 회칙상에는 직접 제출에 대하여 명시된 부분은 없는 것 같아 만약 직접 제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그 부분도 회칙 상에 감사 자료 부분에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중감위원장: 해당 부분은 저희도 생각 못한 부분이라 언급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서 언급해주신 수평적 부분, 관련되지 않은 부분, 감사 대상의 지위에 대한 명시, 감사 대상에게 동일한 기준과 감사를 적용하자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어떤 조항을 기입할 지 내부적 회의 거친 후 개정안을 다시 만들도 하겠다. 감사하다.

총: 추가 질의 있으신 대표자 있을까요?

부총: 질의시 원안과 개정안과 헷갈린 것 같은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질의는 개정안을 기준으로 말씀하는 점 참고해달라. 5조 2항을 보면 감사 자료에 집행부원 명부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왜 필요한 것인가. 어떤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쓴 조항인지 알려주기 바란다.

인문.정: 부총학생회장 의견에 덧붙여 발언하겠다. 중앙감사위원회는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회계를 감사하는 기구지 학생회의 행사나 자치에 대해서는 개입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집행부원 명부는 왜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지는 의문이고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답변 바란다.

총: 중감위원장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

중감위원장: 타 학교 조항을 참고하면서 옮겨온 부분들이 있는데 집행부원에 대한 내용도 인지를 했었다. 통장 사본이나 관련된 내용이 ???이 집행부원 중 1명인지 확인을 거치기 위해 집행부원 명부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신 학생 자치의 행사에 개입하면 안되고 회계에만 관여를 해야한다는 부분은 확실히 이해를 하였고 통장 사본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통장 사본의 소유자가 집행부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를 만들어 운영 규정 쪽에 추가하고 해당 사안에 따라 집행부 명부는 삭제하도록 하겠다. 답변이 되셨는지.

인문.정: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장 사본의 관리자는 각 단위에서 회계 담당자가 될텐데 어찌피 중감위에서 회계 담당자의 명부를 수합하기 때문에 명단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해당 부분 명확히 삭제했으면 좋겠다.

중감위원장: 삭제하고 관련해서 만약에 통장의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장의 소유주

를 확인하기 위해 집행부원의 명단을 확인하겠다는 말씀이었고 별도의 집행부원 전체의 명단을 확인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삭제하도록 하겠고,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운영규정에 기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총: 개정안 4조 5조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들께서는 질의해달라.

부총: 질의하던 중이라 이어서 하겠다. 5조 3항과 6조 3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다. 5조 3항의 경우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중감위가 자체적으로 의결하여 통보하겠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기한 내 제출이 불가능한 자료를 요구한 다음에 실무자가 기한을 못 맞추면 징계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시고 제출 기한에 대한 피감사기구와의 일정 협의가 이 조항 뿐 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감위가 출석이나 제출이나 감사를 통보하는 상황에서 명시되어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반영해달라는 요청이며 생각을 말씀해달라.

인문.정: 이 부분에 있어 덧붙이고 싶은데, 제 4조 감사 계획에 2항에 1호에 감사일정 계획표가 있는데 제 5조 감사 자료에서 3항에서 추가 자료의 제출 기한은 중감위가 의결하여 정한다할 때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이 애초에 제 4조에 감사 계획에 있는 감사일정 계획표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함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 5조 3항에 추가 자료의 제출 기한은 중감위가 감사 일정 계획표에 사전에 명시에서 그대로 추가자료의 제출 또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심이 피감사기구에 대한 소통이지 않나 생각한다.

중감위원장: 중감위원과의 일정 협의 관련하여 중감위가 자체적으로 정한 추가 일정에 대하여 통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해를 했다. 그러한 부분과 관련하여 면접 때 말씀드린 부분도 이러한 기초적이 구체적인 측면에서의 소통이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회칙 조항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감사 일정 계획표에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은 사과대 학생회장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사전에 명시해서 피감사기구 입장으로 하여금 추가자료제출 기한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감사일정계획표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총: 사과대 회장님 답변이 되셨는지.

인문.정: 이해됐다. 만약 지금은 회칙 개정을 직접하시는 중감위원장이시만 이게 만약 인수인계가 되어 내년으로 가면 이 개정안 그대로라면 추가 자료 제출 기간을 중감위가 자체적으로 의결하여 감사일정계획표와 무관하게 통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제 5조 3항에 추가 자료의 제출 기한은 사전에 공시된 감사일정 계획표에 의거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중감위원장: 워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다.

총: 부총님 답변 되셨는지

부총: 5조 3항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본다고 하셨으니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개정안의 6조의 3항을 보면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수평적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3항에 나온 표현은 모두 모호한 표현인 것 같다. 그 중 가독성 요건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

인문.정: 인문대 덧붙여 추가 질의 드리겠다. 정당성도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정당한지 아닌지 인지 이 예산이 어떠한 회칙에 준수하여 의결을 통해 집행이 되었는지의 정당성을 따지는 건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

총: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명확히 설명과 더불어서 명문화된 규정이 확립될 수 있도록 고려부탁드린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감위원장: 20초 정도만 답변 준비하고 답변 드리겠다.

총: 네.

중감위원장: 답변 드리겠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 3항과 관련해서 정당성, 그리고 가독성 내용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해당 부분 설명을 드리면 가독성을 워딩으로 사용한 이유는 제출한 자료가 감사자료로 인식되는데에 무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표현하기 위해 명시하였는데 이 부분은 부총학생회장님께서 얘기해주신 것처럼 모호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해당 부분 정확한 워딩으로 바꿀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보겠다. 원본 자료 훼손으로 인한 실제 감사 진행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었고, 정당성에 대해서 인문대 학생회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학생자치에 관여를 하는 건 절대 아니다. 학생자치 내에서 정당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그 내용은 아니고 후자에서 잘 얘기해주신 것처럼 회칙을 준수한 정당성, 의결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된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 부분도 제가 내부 구성원 협의 통해 워딩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다시 검토해보겠다.

인문.정: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원래 회칙에 5조 1항을 보시면 감사라 함은 감사대상의 회계에 대한 감사를 말하며 예산집행목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워딩이 있어서, 중감위의 존재 의미 자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수정하신 안의 6조 감사기준의 워딩, 예산집행의 목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6조에 명확히 실어주시면 오해가 사라질 것 같다.

중감위원장: 해당 부분 인지하였고 6조 감사기준에 기존 원안, 정의 감사라 함은 감사대상의 회계에 대한 감사를 말하며 예산집행의 목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 반드시 넣겠다.

총: 부총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란다.

부총: 이것도 말씀을 해주신 대로 하면 될 것 같다. 1장중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9조인데...

총: 잠시만요. 9조는 아직 받지 않고 6조, 7조까지만 질의 받도록 하겠다. 제가 질의드리겠다. 5조 4항에 보시면 중감위실 확보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주신 걸로 안다.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총학생회 산하위원회실도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앙감사위원회실이 장소 확보가 언제 될지 확답을 못드린다. 확보의 일정을 잘 고려하셔서 조항을 한 번 더 개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중감위원장: 해당 부분 인지하였다. 감사하다.

사과.정: 추가적으로 제가 사본을 직접 제출 받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아까 의견을 드렸는데, 송실대가 외대에서는 사본을 총 3부를 인쇄해서 보관하고 계신다고 들었다. 사실 저희 학생회 같은 경우는 복사기구가 없다.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각 단위에서 복사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 같다. 이번 감사를 지켜보면서도 팩스 비용도 개인의 사비로 부담하는 단위가 훨씬 많았어서 사본 제출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와닿지 않기 때문에 만약 복사 비용을 이번 팩스처럼 다 개인의 사비로 지출해야 하는거면 직접제출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중감위원장: 네 해당부분도 인지를 하고 팩스비용을 개인 사비로 지출하는 것은 만약 그 부분을 미처 알지 못해서 네 이제 알았다는 점도 말씀드리겠다. 개인의 사비로 부담하는 것은 절대 안 되겠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것 또한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함. 복사량이 상당히 많아지는 때에 프린터기가 없는 단위에 대해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프린터기를 구매를 하고 별도의 인쇄실에 프린트를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발생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일단은 제가 왜 직접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게 먼저인 것 같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송실대 외대가 그러서는 아니나 송실대 외대가 직접 원본자료를 운반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친결과 왜 직접자료를 해야할까 라는 고민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져봤었는데 그때 온라인 자료 제출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상당히 조작하기가 쉽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요즘은 각종 툴들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조작할 수 있는데 물론 원본이나 복사본도 충분히 조작할 수 있는 우려는 있다. 그러나 온라인보다는 빈도가 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원본 쪽으로 기울었다. 원본보다는 복사본으로 하는 것이 학생회 입장에서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원본을 가지고 있는거는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원본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한다면 질의를 하기 전에 직전에 원본을 잠깐 받아서 스캔을 한 다음에 원본을 돌려드리는 쪽으로 직접제출을 진행을 할 예정이다. 그러면 복비도 안들고 바로 스캔기를 통해서 스캔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본 3년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

본을 가지고 온라인 스캔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직접자료 제출을 저희가 구상한 이유는 그러한 맥락으로 파악해주셨으면 한다. 복사본 세부제출에 대한 고민을 확실히 알아서 이 부분은 복사본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내부 협의후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총: 네 6조 7조까지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없는 것으로 하고 개정안 8조 9조 10조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총님

부총: 질의는 아니고 아까 설명 드린것에 개인의견 9조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고한다라고 되어있고 A0사이즈에 공고문을 공고한다고 되어있는데 인스타그램이 사업을 철수하면 회칙을 바꿀 수도 없고 종이사이즈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프라인 온라인에 기재한 다라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한 맥락에서 내용을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한다.

인문.정: 네 부총학생회장님 의견에 추가적으로 보태자면 이러한 부분까지 세칙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앙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만드신다고 들었다. 그 운영규정에 삽입하면 좋을 것 같다.

중감위원장: 네 우선은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도록 좋은 질문 주신 것에 감사하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페이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도 오프라인, 온라인 형태로 구분을 해서 좀 더 포괄성을 바꾸겠다. 그리고 인문대 학생회장께서 말해주신 이러한 부분은 운영규정쪽에 기입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을 내 주셨는데 내부 협의를 거쳐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사과.정: 사과대 학생회장 질의 있습니다. 이따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피감사기구의 권한이 축소가 되었고, 감사기구인 중앙감사위의 권한이 확대가 되었다고 느껴진다. 아래에서 원래 원안에는 총회의 준하는 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치면 감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원안에 명시가 되어있었는데 그 부분도 삭제가 되었고, 추가적으로 개정안에서 제 8조 이의제기 부분이 원안과 상당히 달라서 피감사기구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 원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제 33조 감사 이의제기 이의제기 기간은 공고 후 10일 동안으로 하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이의제기기간이 끝난 후에 15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해 의결을 하고 제 34조 마감으로 들어가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에 대한 의결 직후 즉시 감사를 마감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개정안으로 가져오신 제8조 이의제기를 보면 2항의 1호에서 이의제기를 승인하는 경우 재감사를 하고 조건부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결고보고서를 수정해서 피감사기구에 통보를 하고 기각이나 각하를 하면 각하 사용을 통보를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으면 사실 피감사기구가 이의제기를 하는 이유나 피감사기구의 이의제기의 목적이 잘 반영될 것 인지를 잘 모르겠다. 이 부분은 원안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개정안의 방향성이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인문.정: 인문대학도 사회과학대학과 동일한 의견이다. 이의제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원안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이의제기부분에서 피감사기구에 대한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다고 생각이 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감위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중감위원장: 20초 정도 정리하고 답변드리겠다.

총: 네 다른 이어폰으로 교체 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운위분들은 잠깐만 대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문.정: 혹시 그러면 제가 잠깐 틈을 타서 단과대 회장님들께 좀 질문 사안이 있는데 중감위 회칙이 저는 사실은 개정이 원안에 기초해서 될 줄 알고 단운위에서 논의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려는 완전 재개정 수준이다. 다 바뀌는 스타일이라 단운위 의견이 적절히 수합이 되었을지 약간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거의 재창조 수준이라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쭙어 본다

총 : 저는 여쭙어보나 당연히 단운위 의견수합이 안되었을 것이라 생각함. 오늘 개정안을 받아본 입장에서 재제정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거의 싹 갈아 엮어졌다고 생각함. 우선 다음주 전학대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중운위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그 전에 중운위와 단운위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수정한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받을 예정임. 자료를 받고 최종 질의답변을 거친 후에 의결을 거쳐 전학대회 안건상정을 할 계획이었음. 이 과정에서 전학대회 안건상정까지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이 되면 부득이하게 이번 전학대회는 안건 상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는 중감위원장과 질답이 마무리된 후에 한 번 더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음.

인문 정 : 저도 총학생회장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이것에 대한 단운위 의견수렴도 이루어져야 하고, 다시 중운위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전학대회 안건상정까지 하면 일주일 정도 전학대회가 남은 시점에서 촉박할 것이라 걱정되는 부분이 있음.

사과 정 : 궁금한 부분이 중감위나 총학생회칙 개정에 대해서 원래 단운위까지 이야기를 하는지, 작년에는 개정안에 대해서 중운위에서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총 : 단운위에서 의견 수렴을 하는 이유가 단운위가 안건상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단운위 위원이 전학대회에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칙에 대해 정독을 하고 단운위에서도 회칙 개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중운위 대표자들이 안건상정을 하는 것임,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단운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아님.

사과 정 : 저는 전학대회 전에 단운위에 의견수렴을 한 번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음, 전체 개정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것 정도로만 전달을 하면 될 것 같음, 전학대회 전에 다시 단운위 의견수렴을 하고 다시 중감위를 만나고 다시 중운위에서 논의하는 이 과정은 생략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함, 왜냐하면 이미 단운위 의견을 한 차례 수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 정도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함.

총 : 해당 내용은 기타 안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음. 중감위원장은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기 바람.

중감위원장 :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림, 이의 제기 관련한 내용을 짚어주셨는데 개정안과 원안에 큰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중감위가 주체가 된 입장에서 이의제기를 행하는 중감위에 대한 내용만 많이 있는 것 같아 원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작성하겠음.

총 : 6~10조까지 질의가 있는 대표자께서는 질의해주기 바람. 없는 것 같으므로 제 2장 중앙감사위원회로 넘어가겠음. 제11조~13조에 대해 질의가 있는 대표자께서는 질의해주기 바람.

부총 : 13조에 대해 질의하겠음, 전학대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좋으나 문장 그대로 보면 감사만을 위해 임시 전학대회를 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필요성에 비해 수고로움이 크다고 생각됨, 외대에서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대의 경우는 외대 중감위가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전학대회 소집에 명분을 가지는 것이지 우리 대학의 중감위 체제로 보았을 때는 중감위의 감사보고를 위해, 혹은 중감위의 요청에 의해 전학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기구의 크기나 소집에 드는 노력에 비해서는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함.

중감위원장 : 현재 대표성을 고려했을 때, 외대는 중운위 중 1~2명이 중감위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대표성을 띄는데 반해 우리학교는 그 수고에 비해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해주셨음. 전학대회 소집에 대한 특실에 대해 얘기해주셨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면 내부적인 회의를 거친 이후에 이외 다른 보고 방안을 모색해보고 다시 개정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부총 : 알겠음

총 : 제11조~13조에 대해 질의가 있는 대표자께서는 질의해주기 바람.

사과.정 : 전학대회에서 얘기하면 수정안을 발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제 12조 구성 부분에 중감위의 구성원은 중앙감사위원장(이하 중감위원장)과 중앙감사부위원장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음.

중감위원장 자체도 사실 중감부위원장도 줄임말이라면 중감위원장도 줄임말이기 때문에 중앙감사위원장(이하 중감위원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음. 사실 징계 장에서 재차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제 13조 2항에 있는 징계권과 5항에 있는 징계조항에 있는 제재 조치에 의해서 징계권을 중감위가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음. 사실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의 징계권의 경우에 송실대와 한국외대가 그런 징계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송실대의 중감위원장단이 학생 투표로 선출된 선출직이기 때문이고, 한국외대의 경우에도 선출직이기 때문인데 현재 우리학교 중감위의 현실을 생각했을 때 징계권을 중감위가 갖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해보임. 그래서 이 부분은 중감위에서도 재고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이따 징계 장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좋을 것 같음.

중감위원장 : 중감위 구성에 대해 이하 중감위원장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제 4조에서 이하 중감위원장이라고 명시를 해서 구성에는 따로 표시하지 않았음. 징계 관련해서 중감위가 징계권을 갖는 것에 대해 정당성이 있는가에 대해 얘기해주셨는데 선출직에 대한 논의는 아무리 이루어져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함. 분명히 제가 중운위의 선출로 뽑혔음에도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분명 직접 선출로 뽑힌 것에 비해 대표성이 부족하고 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됨. 개인적으로 보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그렇다. 징계권을 넣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았음, 어떻게 보면 언급해주신 외대는 선출직 인원 중 1~2명이 중감위원을 구성하고, 송실대는 직접 선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표성이 갖춰지지만 현재 우리학교의 경우는 중감위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회계 감사와 관련해서 정말 제대로된 감사를 진행했을 때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리거나 책임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음. 분명 더 좋은 방법이 있고, 징계라는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고민했지만 징계는 충분히 재고될 수 있는 사항임. 사과대 정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징계권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징계에 대한 책임은 피감사기구가 표면적으로 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짐, 징계를 받는 단위가 생긴다는 것은 중감위 존재여부와 직결이 될 만큼 큰 문제라고 생각함. 중감위에서 제대로 된 전달사항을 전달하지 않았거나, 회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여타 단과대 감사 시행세칙을 논의하는 과정 중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거나 그런 중감위 자체적으로도 성찰해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함. 징계의 책임이 온전히 피감사기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도 그런 책임을 통감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중감위도 어떠한 부분이 부족했는지 입장문을 통해 밝히거나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제대로된 감사를 진행했을 때에는,, 저도 각 단과대에서 보내주신 합동 질의서를 읽어보았음.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떠한 부분에서 어긋나다고 생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았음. 우선 1차적으로 징계라고 결론을 내렸음. 그 징계 수위가 높지 않은 선에서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중감위가 어떠한 일을 더 해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이 많이 됨. 1차적으로 징계라는 결론을 냈는데, 앞서 계속 소통을 언급드린 만큼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함. 회칙을 내놓고 이번 회칙도 개정되면 좋고 아니고 라는 식으로 개정안을 낸 것은 아님. 궁극적으로 내년에 선출직 인원은 조금 더 효율적인 틀 안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번에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로서 중감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과대 정이 말씀해주신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사과.정 : 원안 자체에 징계에 대한 것이 있는 상황에서는 징계를 받은 피감사기구가 발생했을 때 중감위 자체적으로도 감사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 유효하나, 현재 징계에 대한 장이 없는 상황에서 징계라는 것이 불러올 역효과 등에 대해 검토를 하고 과연 이 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부터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저도 중감위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중감위 대표자와 중운위, 단운위 모두와의 소통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회칙과 관련된 문제는 소통으로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이것은 대표자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게되고, 올해는 소통이 잘되어 해결되더라도 내년에 그렇지 않다면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함. 징계의 장이 만들어지면 회칙으로 징계를 당하는 단위가 생기게 될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소통의 문제를 넘어서 대외적으로 커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징계의 장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것에 대해 2장부터 논의가 길어진 것 같아 징계 건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논의를 마치고 싶음.

부총 : 같은 내용인데 징계를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재정사용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

면 이미 중감위에서 해당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절차가 만들어져 있다는 말을 하고 싶고, 징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함. 단순히 재정 사용에 문제가 있었으니 합당한 결과를 내겠다는 것은 학생회에 대한 징계는 1차적으로 학생회원들에게 있음, 대표자가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학생들로부터 이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임. 따라서 중감위에서 이것을 논의해야한 사항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이 내용은 강력히 재고해보기를 말씀드립니다.

인문.정 : 인문대도 사과대와 부총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함 추가적으로 인문대는 기존 원 회칙 중감위는 피감사기구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중감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함. 회계 감사 이외의 일은 중감위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징계 같은 경우는 그 단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중감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 기존 원안을 살리시기를 제언드립니다.

사과.부 : 12조에 대해 사과대 정이 말씀해주셨는데 중감위원장께서 구성에 대해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수정을 해야 할 것이 있는 게 개정안 기준 12조 이후에 중감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중감위원을 위원으로 칭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12조에서 언급한 부분이 없어서 수정해야 할 것 같음. 중감위란 단어가 중앙감사위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감위원이 이전에 등장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12조 구성에서 이를 처음 작성할 것이라면 12조 구성에서 중앙감사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중감위원장 : 위원장 위원을 감사위원장으로 수정해달라고 하신 것이 중감위가 앞서 중앙감사위원회라고 언급이 안 되어서인지,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람.

사과.부 : 원안에서는 중감위원장을 이하 위원장, 중감위원을 이하 위원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제12조에서 다시 한 번 명시해주셔서 이후에 혼선 없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음.

중감위원장 : 개정안에서 이하 위원장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이하 중감위원장이라고 표기한 사항인데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말씀해주시는 건지 다시 한 번 여쭙보겠습니다.

사과.부 :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하 중감위원장으로 표기한다고 하셨는데 개정안 기준 15조에 2항에 봐도 위원장이라고 적혀있고, 그 이후에도 위원장과 위원이라고 계속 적혀있는데 위원장과 위원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이것을 명시해야하지 않는지 의견을 드린다.

중감위원장: 완전하게 이해함. 위원장이라고 사용된 부분은 중감위원장으로 통일하고 위원이라고 사용된 부분은 중감위원회로 통일하겠다. 언급한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개정된 안으로 가져오겠다. 감사하다.

사과 부: 네 감사하다.

총: 네, 11조, 12조 3조, 14조까지 질의 있으신 대표자 분께서는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인문 정: 인문대학 질의 있다. 회계 교육이 도대체 무엇인지, 무엇을 교육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사실 저희는 중앙감사위원회가 왜 피감사기구에게 교육까지 하는지 의문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설명했으면 한다.

총: 저 또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중앙감사위원이 대표자분들보다 회계에 있어 전문성을 띤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회계 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 기재하게 되신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감위원장: 네 혹시 들리시는지?

총: 네 들린다.

중감위원장: 제가 질문을 못 들어서...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한 번 더 여쭙볼 수 있는지.

총: 네 인문대 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문 정: 일단은 개정안 14조 6항... 2의 6항인가를 보시면 중앙감사위원회는 피감사기구에 회계 교육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회계 교육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중앙감사위원회가 왜 피감사기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총학생회장님 계속해서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다.

총: 첨언을 조금만 하자면 중앙감사위원장과 위원이 대표자보다 회계에 있어 전문성을 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 전문성을 띠다고 본인들 스스로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회계에 있어 전문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회계 교육을 기재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감위원장: 해당부분에 관련해 설명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회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워딩을 바꿔야한다는 판단을 내림. 회계 교육이 아닌 감사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해당 기구가 제출해야 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매 정기 감사 한 달 전에 교육을 진행한다는 목적으로 작성을 해놓은 것이다. 별도로 중운위분들이 질문 주신 전반적인 회계 교육을 하기에는 중앙감사위원회도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전문기관, 회계에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전문가도 계시기 때문 외부단체에서 교육이 진행된다면 가능하겠지만 회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앞서 얘기해주신 바와 같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감사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 교육이라고 설명 드리고, 워딩 또한 감사 교육의 내용이나 목적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수정해서 개정안을 도출 드리겠다. 감사하다.

인문 정: 죄송하다. 부총학생회장님. 한마디만 해도 되는지.

부총: 예

인문 정: 네 저는 감사 교육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감사 계획표를 전부 공지를 받고, 그 다음에 감사 때 제출하는 자료, 감사 때 기준을 중앙감사위원회가 사전에 다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굳이 감사 교육까지 필요하지 않은 절차를 하나 더 뒤야하냐는 의문점이 든다.

총: 그 부분에 있어 저도 똑같은 얘기 드린다. 교육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조차 반대한다. 교육이라는 것은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가르친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인데, 대표자분들께서 피교육을 받을 만큼 무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문 정이 말씀한대로 이미 사전에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소통되고 있다고 생각. 교육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임.

부총: 저도 사실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물론 회계나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단위도 있겠지만 중앙감사위원회와 학생자치기구 간의 예/결산을 기록하고 확인하는 방법론이 다른 것이지 어느 한쪽이 월등히 회계나 예산 관리를 잘한다든지 못한다든지 이런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근데 교육이라는 말은 상하관계가 엄연히 있는 말이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다시 찾아보시길 바란다. 그니깐 그 감사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이신 활동의 목적은 중앙감사위원회가 그 가지고 있는 회계 감사 기준을 설명하고자하는 자리이지 않느냐. 그 목적에 맞는 단어를 찾아보셨으면 한다.

중감위원장: 해당 부분 답변 드리겠다. 질문 더 있는지.

사과 정: 같은 부분이긴 한데 제 14조 의무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긴 하다. 답변 듣고 질문 드리겠다.

중감위원장: 네 해당 부분 답변 드리겠다. 감사 교육도 불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감사 일정을 사전에 공고를 하고 감사 자료를 제출을 받고... 우선은 부총학생회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교육에 대한 워딩 자체에 대해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교육이 아닌 설명의 목적이 맞다고 판단하였고, 총학생회장님께서 교육을 받을 만큼 무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주셨는데, 절대 무지하다고 생각을 하고 워딩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잘 설명이 되고 그 내용을 숙지를 해서 감사를 받는 단위도 있겠지만 이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개괄적으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피감사기구도 효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에 있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고 만약에 중언위원분들께서 해당 사항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해당 부분은 진행하지 않겠다. 이상이다.

사과 정: 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의견 드리겠다. 전체적으로 개정안을 가지 오실 때 분산배치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단순히 분산 배치가 된 것이 아니라 원안의 분산 배치가 되면서 개정이 된 것 같다. 예를 들어 현재 14조 의무 부분이 원안의 제 27조 권한 부분에서 나왔는데 이 중에서 제 27조 권한의 5항이 개정안에 어떤 부분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사항이다. 5항은 감사 대상은 총회 혹은 총회의 준하는 의결을 통해 감사 받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면 중앙감사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중앙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14조 의무에서 나머지 조항은 다 27조에서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감사 거부권에 대한 조항은 개정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가 없어서 이 부분은 왜 삭제하셨는지, 그리고 다시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감위원장: 네, 해당 부분 답변 드리겠다. 아무래도 개정의 양이 많고 시간은 적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모든 안을 설명 드리다 보니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다. 우선 미수감 의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주시는 것 같다. 이제 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면 중앙감사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제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앙감사위원회의 존재 여부랑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단과대와 각 단위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예산은 학생회비로 구성 된 예산입니다. 중앙감사위원회의 처음 존재 목적이 학생회비가 투명하게 사용이 되는지 감사하는데 있다고 설립 목적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만약 감사를 받지 않는 단위가 있다면 그것은 처음에 중앙감사위원회를 설립한 목적과도 상당히 상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수감 의견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제 관련해서 단서 조항이 있다면 전부 다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일부 소수 단위만 정말 정당한 이유 하의 감사를 정말 진행하지 않겠고 할 수 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았을 때 남용의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만약 전체 모든 피감사단위가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 중앙감사위원회가 존재를 해야 되냐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하여 미수감 의견은 제외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사과.정: 네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저희가 여기서 드리는 의견들로 중앙감사위원회의 의견도 반영되어야하기 때문에 가서 재차 논의를 해보아겠지만 중앙감사위원회의 설립 배경에 대해 말씀해주신 것 같아, 저도 중앙감사위원회의 설립 배경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다. 중앙감사위원회가 2019년에 1학기 전학대회에서 설립이 될 당시에 그 때 나왔던 지적들이 각 학과/부나 단과대에서 총회를 통해서 예산을 인준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기구가 생기는 것이 과연 맞느냐 왜냐면 각 학과/부나 단과대 내에서도 단과대 운영 위원이라든지 학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위의 결정에 따르거나 아니면 총회나 전학대회를 통해서 해당 학과/부에 그리고 해당 단위의 대표자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중앙감사위원회의 설립 배경에 대해 그런 의문점이 있었고요, 그 당시 총학생회장님께서 그렇게 2019년 1학기 전학대회에서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제정이 결국 무산이 되었고, 이런 지적을 바탕으로 그 이후에 중앙감사위원회 관련 간담회가 열렸고 2학기에서 당시 총학생회장님께서 이제 그 중앙감사위원회와 약속을 하실 때 중앙감사위원회 제정 배경에 대해 얘기를 하시고, 그니깐 설립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학생 대표자 분께 얘기를 하실 때 학과/부의 회칙, 단과대의 회칙, 그리고 단과대나 학과/부의 총회를 가장 상위로 두겠다, 그리고 중앙감사위원회는 그 상위에서 결정 된 바에서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제27조 5항은 그런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해당 조항은 꼭 유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

인문.정: 인문대학 조금 덧붙여도 괜찮을지. 각 단위에서 지금 단학대회도 진행을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도 하고 있다. 단학대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회계감사와 예산안에 대한 인준을 진행한다. 이건 최고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는 것. 그런데 미수감의결을 중감위 세칙에 넣지 않는다는 것은 최고의결기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생각해주셔야 한다. 최고의결기구 위에 중감이 존재할 수는 절대 없다.

중감위원장: 질문 더 있을지? 해당 부분 답변 드린다. 설립배경에 대해서는 저는 인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숙지하지 못했고 해당 부분이 이러한 형태의 설립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인지하였다. 인문대에서 미수감의결을 넣지 않는다는 것, 최고의결기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바로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는 조금 저도 답변내용을 검토를 하고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다음 개정안 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감사드린다.

총: 11조부터 14조까지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 계실지? 없으시면 개정안 제15조, 16조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다.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다. 제16조 2항을 보시면 중감위원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기타 사항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개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 또한 중앙감사위원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감사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비밀이라는 조항에 의거해서 소상히 공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에 대한 중감위원장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감위원장: 아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특별감사 시 제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비밀을 요한다고 하면 충분히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 부분은 만약에 정말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시가 있는지 확실하게 언급을 해서 회칙 상 잘못된 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진행하겠다. 이상이다.

인문.정: 인문대학도 하나 여쭙볼 것이 있다. 이거는 좀 뒤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리면, 15조 1의 2를 보시면 단과대학 감사시행세칙이 있다. 단과대별로 물론 상황이 다 다를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러한 상황들에 있어서는 중앙감사위원회 회칙에서 단서조항으로 보강을 하면 될 부분이지 전 굳이 단과대학 감사시행세칙까지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좀 더 이 세칙을 만드려고 하는 이유를 보강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중앙감사위원회 시행세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과대 감사시행세칙이 또 있는 건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주시면 좋겠다.

중감위원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단과대학 시행 세칙의 경우, 기존에 말씀드렸던 단과대별 감사 가이드라인과 관련돼있다. 단과대별로 상황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런 단과대 회계감사에만 관여를 하지, 어 물론 다른 이외 상황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과대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단과대에서는 학과, 학부부들을 가지고 있는 특성까지 고려하여 단운위원 분들과 함께 단과대별 감사 시행세칙을 만들면, 감사간의 좀 더 단과대의 입장이라든지, 단과대가 바라는 바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단순히 중앙감사, 진행되는 감사시행세칙을 다 가지고 단과대 감사를 함께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단과대에서 이제 바라는 것들이나 좀, 사항들은 회칙 이외에도, 이제 세칙을 따로 개설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듣고, 기존 감사 시행세칙에 조금 추가되는 방향으로 단과대 입장을 반영한다, 단과대 입장을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고려한다는 식으로 워딩을 추가를 해서 단과대학 감사를 진행하는데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인문.정: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단과대별 특성을 얘기해주셨는데, 그 중앙감사위원회는 회계내역에서 이제 이 회계 내역이 이제 진짜 맞게 쓰였는지, 그거를 영수증이나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비교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부서이지, 단과대별 특성을 왜 조사하려는지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혹시 뭐 단과대별 특성, 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왜 단과대별 특성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감사 시행 세칙이라든지 감사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지 사실 명확하게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좀 구체적인 사례 같은게 있으면 좀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사과.부: 네, 저 추가적으로 인문대 학생회장님 말씀에 좀 덧붙이자면, 단과대학, 어, 말씀하신, 그러니까 중감위원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단과대학 특성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단과대학별로 학생회비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회칙에 다 명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중앙감사위원회 제출 서류에 각 단과대 및 단위의 회칙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왜 이 회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감사 시행 세칙을 검토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고, 그리고 해당 회칙만으로 중앙감사위원회가 각 단위들의 차이를 확인하시는 데에 부족하신지도 여쭙고 싶다.

중감위원장: 답변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감위원장: 우선은, 단과대별 특성이 어떤 것이냐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우선 감사에 대한, 이제 감사를 실제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감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단과대별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수집을 해서 제가 좀 숙지하고 있지 못한 부분까지도 대답을 해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감사 기한정도를 생각을 했다. 이제 각 단과대나 사업이 일회적으로 이제 매번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5월 중에 한다, 5월 초에 한다라는 식으로, 사업의 시기가 크게 변동되지 않고,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한 측면까지 생각을 했을때, 자료 제출 기한을 좀 더 유동적으로 바꾼다든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단과대별 특성을 반영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이러한 부분까지 설명이, 설명이 되고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다.

인문.정: 근데 이제 세칙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니까 이제 중감위 내부에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세칙에 담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시기 같은걸 얘기해주셨는데, 이미 그런 거는 충분히 지금 이 존재하는 세칙에서 단서조항 보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중감위원장: 네, 답변 감사드리고, 해당사항과 관련해서 좀 더 의견 취합을 한 뒤에 개정안을 제출할 때쯤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을 인문대학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단서조항에 추가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면, 단과대별 감사 시행세칙 제정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네, 15조, 16조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신 대표자분들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네 다음으로, 제17조 부터 제20조까지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감위원장: 네 우선 질의 전에, 그 징계 처분에 관한 사항은 아까 징계 관련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재검토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은, 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네 질의 없으신 걸로 하고, 제8조 및 제5장으로 이관에 관련해서도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네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절 중앙감사위원장단, 제21조부터 23조까지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문.정: 어,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걱정되는 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약간 사실 이 중감위원장단과 단과대 중감위원이라는 조항을 좀 종합해서 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조항들이 개정안을 보고 이 조항의 취지나 목적은 충분히 알겠으나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현재 단과대 중감위원들도 제대로 뽑히지 않은 상황에서, 중감위원장단을 2인 1조로 해서 어, 모집한다던가, 단과대 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어, 기존보다 훨씬 더 증감된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했고, 목적은 좀 알고있겠,알고있는데 이게 과연 이게 세칙이라는 것이 현실성도 반영을 해야되는 부분이잖아

요? 그래서 이거 혹시 현실 반영해서 중감위 내부에서 논의를 해보신 게 있는지 좀 여쭙보고 싶습니다.

중감위원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감위원장과 중감부위원장, 에 대한 구분인데 어, 이 내용은 중감 부위원장이 만약에 뽑히지 않을 상황도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직접 선출직을 당연히 목표를 하고 있겠지만, 어 이제 중운위 분들과 대표자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중감위 존폐의 여부를 결정할만큼 중감위가 필요하지 않은 조직이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관련해서 이제 내년에 선출직 보다는 기존의 조직을 유지하거나 또는 아예 폐지 여부를 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위원장, 중운위에서 선출하는 방식이 진행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이제 부위원장까지 선출을 해서 업무상 이제 대표성을 띄는 인원이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그런 생각들을 해서 이제 부위원장을 신설을 했고, 현실성 관한 내용은 충분히 이제 이야기 해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 지원자가 이제 많이 없었고, 다시 중감위 인원이 현황이 적은 만큼 단과대의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분들이 이제 하나의 단과대를 한명이 이제 진행 하는 것이 기존의 원칙이었었는데, 한 명의 인원이 이제 3개, 4개의 단과대 감사를 진행하면서 인력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단과대 감사위원회를 신설해서 어, 단과대 감사 위원들과 함께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구체적인 감사 기준을 갖고 재개될수있게끔 하기 위함이었구요, 한명이 진행하면 뭐 문제 안되지않냐, 왜 문제가 되냐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명이 이제 4개, 3개 단위를 진행했을때 분명히 시간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을거고, 또 이제 단과대별로 자의적인 감사 기준이 작동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여러명에서 이제 협의하고, 여러명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해서 어 단과대 감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면, 어 기존의 단과대 위원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모집을 해도 만약에 인원수가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이제 한명의 단과대 위원이 4개의 단과대를 맞는 것 보단 4개의 단과대, 단과대 감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훨씬 더 운영상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단과대 감사위원회를 따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총: 부총학생회장이고, 같은 내용에 대한 비슷한 맥락의 그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 지금 단과대 감사위원회를 두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단과대 일단, 그 처음에 배경은 단과대 위원이 지금 다 선발이 되지 않아서 선발이 된 위원의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단과대 감사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체계를 지키겠다고 하셨는데, 어 과연 지금 단과대 감사위원마저도 잘 뽑히지 않은 상황이 뭐, 세칙을 돌린다고해서 개선이 될 지는 다같이 재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과대 감사위원이 뽑히지 않지만, 회칙을 이대로 개정하면 차후에는 단과대 감사위원회 설립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는 것밖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성을, 꼭 고려를 하시고 중감위 내부에서 강하게 재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그 인원이 선발되지 않는 문제를 꼭 조직의 크기라든지 그게 아니라 왜 지원을 하려고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중감위 차원에서도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감위원장: 네 해당부분 질문 감사드리고, 인문대 학생회장님 그리고 부총학생회장님이 해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더 강력하게 재고를 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총: 아 죄송합니다, 저희 집행부 목소리가 들어갔는데요, 네, 21조부터 23조까지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께선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신걸로 하고, 24조, 25조에 대한 질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정: 그, 24조, 24조 1항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 중운위 의결을 통해 선발을 하는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저희 단운위에서 나온 의견인데 이거는 개정안을 바탕으로 드리는 의견은 아니고 단운위에서 그 중앙감사위원장이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선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중감위 내부에서 조금 더 고려를 해서 해당 조항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이야기를 나눌때는 직접선출제도에 대해서도 재고를, 그러니까 첫번째는 직접선출, 두번째는 호선제도, 세번째는 전대 중감위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나가는 방향,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첫번째 직접선출제도의 경우에는 사실 아직 중감위 지위가 아직까지 단단히 구성되어있지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직접선출직으로 아무도 출마를 하디 않는다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중앙감사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누가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불가능할것같다 생각을 했고, 호선제라는건 중앙감사

위원을 뽑고 그 중에서 중감위원장을 한명을 선출하는 제도인데, 이 부분은 특정 기구의 권력이 편하, 표명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했구요, 세번째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3대 중앙감사위원장을 2대 중감위에 있는 임기 말에 선출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세습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세습의 우려는 있지만 어차피 중앙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는 인준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세습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중앙감사위원장 선출을 계속 중운위에서 의결 통해서 선발하는게 중립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개정할 수 있다면 중앙감사위원회에서 한번 더 좀 논의를 해보셔서 개정안으로 같이 산정하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중감위원장: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생각했을때도 가장 큰 우선순위는 선출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직접선출 형태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바꿀것인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 선출 관련 해서 이제 직접선출로 변경하자, 변경을 권해드리지 않은 이유는 중감위가 학우분들께 있어서 학우분들께 대표자분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필요한 기구인지가, 면접때 말씀드린것처럼 중감위가 있어서 든든했다 라는 말이 임기 말쯤에 나와야지 아, 그러한 부분까지도 직접선출로 바꿈으로써 뭔가 중감위가 필요하기때문에 보다 더 이제 정당성을 가지는 방식으로 뽑는 것으로 개정을 해야겠다 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중감위를 지켜보자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중감위를 지켜보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어요. 중감위를 제대로 수행이 될지, 그것은 중감위가 제대로 작동이 안될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 2학기 이제 회칙 개정 이전까지 한번 지켜봐주시고 해당 사안에 대해 중감위가 어 직접선출직으로 바뀌어야할 정도로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 어느정도 집단이 존재하는게 맞다는 의견이생기면 그때는 직접선출직으로 바뀌는게 저도 맞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감위원장: 집단이 존재하는게 맞다 라는 의견이 생기면 그때 직접선출직으로 바뀌는게 저도 맞다는 의견이다. 이상이다.

사과.정: 네 제가 드린 의견은 사실 직접선출제도가 좋은 방향이라는 말씀은 아니였고 잠시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세가지 첫 번째는 직접선출 두 번째는 호선제. 호선제라는 것은 중감위원회 먼저 구성을 하고 그중에 한분이 이제 중감위원장이 되는 방안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전대 중운위가 선출을 해놓고 임기말에 나가는 방식 이렇게 세가지를 제안을 드린거고 그런데 저희 사과대 단운위에서도 이 부분도 이런 단점이 있고 저 부분도 저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세가지 방향 그리고 이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있을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감위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있다. 저도 직접선출에 대해서는 지금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중감위원장: 우선 세가지 안에 대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당부분 제가 중감위 내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계속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감사드립니다.

총: 저도 한가지 말씀드리겠다.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원안을 보시면 중앙감사위원장은 매년 12월 이내로 선발을 해야하고 제 5장 권한대행을 보시면 다음대 위원장이 12월 1일까지 선출이 되지 못하였을 경우 선출된다 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12월 1일부터 중앙감사위원장이 선발될때까지 선출된 위원 중 누군가는 권한대행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감사위원회가 업무를 행사하는것도 옳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한다. 어쨌든 회칙상을 보면 권한대행이 자발적으로 본인이 뭐 권한대행을 하겠다 뭐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중앙운영위원회가 서포트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감위원장: 네 알겠다. 해당부분도 고려를 해보겠다. 어떻게 보면 권한대행에 대해 얘기를 해주시면서 권한대행이 이게 업무를 수행했을 때 정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포트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라고 해주신 것 맞는지?

총: 네 맞다. 권한대행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중앙운영위원회가 개입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다.

중감위원장: 네 질문 감사드린다. 그래서 외대의 안도 사실 정말 주의있게 봤다. 선출방식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외대처럼 이제 중운위 위원분들 중에서 두분께서 중앙감사위원장단을 구성하셔서 겸임하는 방안도 충분히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모두 이제 직접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신 선출된 분이시기 때문에 해당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전반적으로 장단점을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좋은 의견 감사드린다.

총: 네 24조, 25조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신 대표자분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란다. 네 없는 것으로 하고 제 3절 중앙감사위원 제 26조부터 제 29조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다.

사과.정: 네 제 28조 선발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 원래 기존에는 해당 단위의 소속 재학생 중 한명을 운영위원회 이상의 의결기구로 선발을 했고 그리고 그 선출 또한 면접이나 선출과정을 다 해당 기구에서 진행을 했는데 개정안을 보면 중앙감사위원장단이 중감위원을 선발해서 구성을 하고 위원선발 의결기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원선발 의결기구는 아마 운영위원회 같은데 운영위원회에서 명단을 전달받고 승인여부를 의결해서 전달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다. 그래서 원래 선출자가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중앙감사위원장으로 바꿨는데 혹시 이 이유가 무엇일지?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해당 단위에 필요한 중앙감사위원을 뽑는 이유는 어쨌든 중앙감사위원회로 모여있을 때 예를 들어 사회과학대학 중앙감사위원이라고 하면 사회과학대학 중앙감사위원은 사회과학대학을 뭔가 그 감사를 진행하는 감사위원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중앙감사위원회에서 만큼은 사회과학대학의 대표자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운위에서 선출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요것을 왜 중앙감사위원장단이 선발하는 것으로 바꾸셨는지 요 부분이 조금 궁금하다.

총: 네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중앙감사위원장의 선발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 현재 중앙감사위원장도 피감사대상에게 의결을 받듯이 현재 중앙감사위원도 단운위를 통해서 즉 피감사대상으로부터 의결을 받고 이제 지원을 허가하는 나는데 요거 중앙감사위원장 선발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위해 발언했다.

중감위원장: 네 답변드리겠다. 우선 이야기 해주신 내용들의 근거를 파악했고 메모를 해뒀으니까 이 부분도 중감위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상이다.

인문.정: 저 개인적인 질문 하난데 27조에 제3조 1항 1호에 운영위원회 이상의 의결기구는 각 단과대 운영위원회 이상의 의결기구라고 쓰신건지 원 의도가?

중감위원장: 네 27조에 운영위원회 이상 의결기구에 대해 말씀해주신 것 맞는지?

인문.정: 네

중감위원장: 네 단과대 운영위원회 맞다.

부총: 부총학생회장이다. 28조에 대해서 똑같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아까 사과대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발방법을 아예 바꾸자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예 재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승인 과정은 어쨌든 지금 진행하는 면접과정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런데 그 결격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해 의결기구의 소명할 기회를 후보자가 갖는다고 써놓으셨는데 이 면접이나 아니면 위원선발을 하는 공식적인 과정에서 얻은 정보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정당한 방식인데 이후에 소명을 하게되면 그 소명이면 면접시에 발언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아니면 면접에 제공되지 않은 정보를 새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했을때 그걸 위원선발기구가 판단에 서로 반영을 해야 하는 그런 소명 기회인지 설명해주시고 그러한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그 소명기회는 굉장히 절차상으로 적절치 못하다 라는 생각 또한 함께 전해드립니다.

중감위원장: 우선 해당부분 질문주신것에 감사드리고 이제 선발 관련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재고를 해보겠다. 그리고 소명을 하고 이제 위원선발 의결기구에서 이제 기존의 결정을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해야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잘못된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해당 부분 추후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내부적인 협의에 다시 붙여보겠다. 이상이다.

총: 네 추가 질의 있으신지? 네 다음으로 제3장 단과대 감사위원회인데, 해당 내용에 대한 질답을 진행을 할지 아님 아까 전에 대표자분들께서 해주신 그 질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해주신 답변으로 대체를 할지? 왜냐하면 아까 대표자분들께서 단과대 감사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질답을 진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표자분들의 의견 주시기 바란다. 네 위원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중감위원장: 아, 네 감사하다. 우선 단과대 감사위원회에 대한 기초적인 동의가 우선이 돼야 이 부분도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그에 대한 동의가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제가 또 관련 답변을 더 확실하게 드리지 않았을 때 이 논의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총학생회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다.

총: 네 다른 대표자분들도 괜찮으신지? 네 그러면 이 단과대 감사위원회에 대한 중운위 분들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라고 위원장분께 전달할 수 있겠다. 네 다음으로 제4장 감사에 대한 내용이다. 제38조에 대한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란다. 네 없으신 걸로 알고 제2절 정기감사, 제39조와 제40조, 제41조와 관련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대.정: 일단 인문대학 질의가 있는데요, 제39조 2항의 개정하신 요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회가 전대 학생회 회계 감사까지 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말씀하신 요지들은 좀 동의를 하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 11월 첫 번째 월요일이면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선거기간에 해당이 돼가지고 이때 과연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보완책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회계 감사를 맡은 국장이나 그런 분이 만약에 출마를 하시게 되면 그분은 후보시고 단과대 학생회장은 선관위원장인데 그러면 접촉 자체가 금지되는 부분이라, 물론 사유서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선거 과정에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걱정이 있어서 얘기를 드린다.

중감위원장: 네 해당 부분 답변 드리겠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선거기간에 만약에 기간이 중첩될 경우에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걱정이 있어서 보완책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 학생 국장이 후보자 출마를 하게 되면 접촉 자체가 선거 과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해주셨는데, 해당 부분도 그러한 변수나 예외적인 사항까지 고려해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보겠다.

총: 네 다른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란다. 네 없으신 걸로 하고 제3절 넘어가보도록 하겠다. 제3절에 대한 질답시간 가지기 전에 휴게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자분들의 의견 여쭙겠다.

인문.정: 짧게 휴게를 했으면 좋겠다.

총: 한 5분정도 휴게를 할 수 있는지? 네 제3절이 길어질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서 괜찮으시다면 5분 정도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중감위원장: 네 알겠다. 5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이제 뭐가 있어서 고려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 네

<휴게>

<회의 재개>

총: 제3절 이월금 감사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다. 제24조, 제43조에 대한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혹시 이월금 감사가 학생회에서 차기 학생회로 넘어갈 때 그 금액이 잘 이월되나 이걸 감사하겠다는 건지?

중감위원장: 맞다. 그리고 하반기 정기 감사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든 11월에 하반기 감사를 진행하다보면 11월 중순까지 자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11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자료가 빈다. 그런 부분까지 이월금감사에서 감사기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총: 부총학생회장이다. 한 질문을 똑같이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월금 감사같은 경우 공백기간을 막으려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월이라는 과정 자체는 학생회비만 통장에 넘기면 되는 것이고 정기감사에 해당기간에 대한 감사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데 굳이 분리시키는 이유가 있는지?

중감위원장: 보통 12월 초에 학생회가 꾸러지면 11월에 대한 모든 정기감사를 하반기에 진행하는 것은 제한 사항이 있다. 자료를 받고 저희 차원에서 질의를 해야 하고 재감사나 특별감사까지 생각한다면 재감사가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에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월 말에 지출이 생겼을 때는 해당 사항을 다시 감사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이것이 모든 단과대를 대상으로, 모든 학과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1월 말에 반드시 끝난다는 보장이 없어서 이월금 감사를 신설한 것이다.

인문.정: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학과/부같은 경우는 임기 시작일이 전부 다 달라서 이러한 점은 고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 인문대학생회같은 경우도 예외적인 사례지만 임기가 12월 31일까지다. 이러한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다.

중감위원장: 해당 부분에 대해 학과별, 단과대별로 예외사항이 있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규정으로 잘 드러나게끔, 회칙 상 안 드러나면 운영규정에라도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월금 감사에 대한 내용을 다시 검토해보겠다. 질문 감사드린다.

총: 질의 있으신 다른 대표자분들도 질의해주시기 바란다. 없으시지 않고 사과대 회장님께서 질의해주시겠다.

사과.정: 제가 논의를 역행해서 죄송한데 확인할 사항이 있다. 제2절 정기감사에서 39조 방법에서 정기감사의 시행을 5월 두 번째 월요일로 한다고 적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대 단운위에서 의견이 나왔던 게 대부분의 사과대 단위에서는 총회나 단학대회에서 예산인준을 4월에 받기 때문에 5월에는 충분히 의결기구에서 의결 받은 예산에 대해서 중앙감사위원회에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데, 지금 5월이고 전학대회도 열리지 않았다. 단과대 중에 단학대회를 하지 않은 단위도 있다. 정기감사를 5월에 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예산안을 제출하는 건 사실상 학생최고의결기구 인준이 있고 난 다음에 중앙감사위원회에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결산안을 감사하는 게 상반기 감사이고 예산안은 다음 감사를 위해 자료를 받는 것이다 보니까 예산안을 제출하는 각 단위의 학생총회라든지 단학대회라든지 전학대회나 개강총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학생대표자기구의 인준을 먼저 받고 제출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그렇게 상반기 정기감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린다.

중감위원장: 질문 감사하다. 총회나 단학대회를 통해 예산을 인준 받은 뒤, 평소는 4월에 열리겠지만 지금처럼 늦게 열리는 것을 감안해서 단과대별로 단학대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학생최고의결기구 인준이 난 뒤에 중감위 감사를 받는 게 맞다고 이야기해주신 게 맞는지? 해당부분에 대해서도 중감위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협의하고 다음 개정안 도출 때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

총: 네. 44조부터 46조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다.

총: 없으신걸로 하고 제3조 특별감사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다. 제가 의견 내도록 하겠다. 제47조에 재학생이라는 단어를 휴학생을 포함한 의미인 재적생으로 표기수정할 것을 말씀드리겠다. 총학생회나 단과대학생회는 재학생분들이 내주신 학생회비로 한 학기가 운영되지만 소속 학과의 경우에는 4년치를 한번에 내는 학과가 있고 그게 휴학생의 경우에도 수혜자가 될 수 있는 학과가 있기 때문에 재적생으로 표기 수정 요청드린다.

중감위원장: 질문 주신 내용 한 번 더 확인하겠다. 총학생회와 단과대나 학과같은 경우에 4년치 학생회비를 일괄 납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학생이 아닌 휴학생을 포함하는 재적생으로 하자는 것 맞는지 여쭙볼 수 있을지?

총: 맞다.

중감위원장: 해당 사항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총: 감사하다. 다른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도 질의해주시기 바란다. 질의 없으신 걸로 하고 제4절 재감사 내용 질의 받도록 하겠다.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다. 원안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다. 제5장 징계 및 이의제기 내용 질의하도록 하겠다. 제57조부터 제58조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다.

중감위원장: 앞선 단과대감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징계 사항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권고해주셨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도 동의하십니까? 동의의사 표현해주셨기 때문에 제6장 개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란다.

부총: 부총학생회장이다. 6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중감위가 전학대회를 통해 설치한 기구고 회칙 제개정에 대한 모든 사항이 전학대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위원장께서 중운위 회의를 통해서 개정안을 심의하는 것도 중운위가 전학대회에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기구중에 하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개정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구성하고 전학대회같은 대표자기구가 결정하는 세칙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기구의 소집권을 중감위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 회칙 제개정의 절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덧붙이자면 이는 총학생회칙과 단과대 회칙과도 저촉되는 부분이라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

중감위원장: 해당 사항 답변 드리겠다. 개정에 대한 소집권을 중감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총학생회칙, 단과대회칙이랑 저촉되는 사항이라고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다.

인문.정: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감사시행세칙에 대한 부분도 여러 논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에 대해 문답을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 부총님도 동일 의견이신지?

부총: 방금 말씀하신 게 단과대감사시행세칙은 아까 단과대감사위원회 자체에 대한 의문이 많았어서 지금 문답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면, 저도 그렇다.

인문.정: 그런 의미였다.

중감위원장: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도 아까 단과대 감사시행세칙을 굳이 둘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료되지 않은 사항으로 추후 답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심

의하는 게 앞선 징계와 마찬가지로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상이다.

총: 네. 다른 대표자분들도 동의하시는 것 같다. 제7장으로 넘어가겠다. 제7장 68조,69조에 대한 의견주시기 바란다.

부총: 부총학생회장이다.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련해서 각호의 하나를 택하게 되어있는데 이 안에 따르면 둘 다 후자를 택한다고 하면 중감위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발의하고 의결시켜서 개정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뭐 일단 세부적인 운영규정이기 때문에 중감위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렇다고 했을 때 바뀐 운영규정의 내용이나 운영규정을 바꾸게 된 경위를 중감위 내부에서만 알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어떻게 각각 고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감위원장: 질문 주셔서 감사하다. 만약에 중감위 의결을 통해서 중감위에서의 발의가 이루어지고 의결까지 진행된다면 바뀌게 된 조항 경위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학우분들께, 수요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셨다. 해당 부분도 추가하여 기입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다음 개정안 때 말씀드리겠다. 이상이다.

총: 답변 되셨는지. 다른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들도 질의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거의 끝나가서 진짜 사소한 건데 통보라는 워딩을 이 세칙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 통보라는 워딩 자체가 피감사단위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러한 의미들을 좀 퇴색시키는 것 같아서 통보 이 외 단어를 사용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다.

총: 네. 질의하나 하겠다. 제69조 2항 1호를 보시면 전체학생대표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고 되어있다. 총학생회칙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자면 총학생회에서 의결안건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총학생회칙과 저촉되는 방식이 아닌가 싶어 질의 드린다.

부총: 부총이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학대회의 발의라고 써져있는데 사실 문법적인 부분이라 중요하지 않다. 전학대회는 발의된 내용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전학대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하는 절차를 표시하기 원하는 거라면 회칙에서 규정하는 안건상정제를 적어놓거나 전학대회에서의 발의라고 표기를 수정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하시면 좋겠다.

총: 제가 방금 말씀드린 데 추가설명 드리자면 통과안건이나 보고안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지만 회칙 개정은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부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

인문.정: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감위 운영규정은 세칙 하위에 있는 내부규정이다. 이걸 굳이 전학대회에서 발의해서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중감위원장: 추가적인 질문 또 있을지? 답변 드리겠다. 우선 인문대학생회장님께서 통보라는 워딩 자체가 피감사기구가 이의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통보라는 단어를 대체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 부분도 논의를 해서 통보 말고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있는지 논의해보겠다. 그리고 총학생회장님께서 개정된 안 제69조 2항 1호에 총학생회 회칙 같은 경우 회칙을 개정할 때 과반수 찬성이 아닌 2/3 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총학생회칙과 저촉되지 않는냐고 해주셔서 이 부분도 상위단위 회칙을 참고해서 저촉되지 않는 안으로 변경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부총학생회장님께서 발의된 내용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라는 표현이 전학대회의 발의라는 형식으로 워딩상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안건 상정자를 명시하거나 전학대회에서의 학우들의 발의라고 명시하겠다. 해당 내용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여쭙볼 수 있는지?

부총: 정확하다.

중감위원장: 네. 어쨌든 전학대회가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발의라는 단어가 혼동스러울 수 있었을 것 같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문대학생회장님께

서 어떻게 보면 회칙이 아니라 내부운영규정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전학대회에서 발의를 하는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씀해주셨다. 해당 부분도 중운위 차원으로 발의가 되고 의결까지 되는 방향도 생각을 해보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다. 이상이다.

사과.정: 운영규정에 대한 이야기 추가하고 싶다.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운영규정이 현재 상황에서는 중감위에서 발의를 하고 중감위에서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 원안 (마이크 끊김)

총: 마이크가 꺼져있다.

사과.정: 감사하다. 원안에는 중감위가 발의하고 중운위가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저는 제7조의 1항이 구체적인 감사기준이랑 감사에 활용되는 양식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따로 정한 걸 운영규정이라 하고 운영규정을 어쨌든 중운위 의결로 결정하는 것으로 원안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중감위가 발의하고 중감위가 결정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피감사기구인 양식이 급작스럽게 바뀌어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지 않는다. 물론 중감위 운영을 위해 중감위원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원안에 있는 운영규정이 중감위와 피감사기구가 소통하는 데는 더 용이하지 않다. 양식 등이나 감사기준등이 매년 급작스럽게 운영규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바뀔 경우 그에 따라서 부작용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서 운영규정은 원안을 따라 가는게 더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총: 다른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도 의견 주시기 바란다.

중감위원장: 먼저 사과대 학생회장님께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먼저 부총학생회장님께서 바뀌게 된 경위나 어떻게 실무진들에게 명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중앙감사위원회 운영규정같은 경우에 내부적 의결을 거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해당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답변으로 이야기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사과대 회장님께서 양식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실무자가 갑자기 중감위 차원에서 바꾸어버리면 어떻게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는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고 학생회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원안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도 좀 더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협의를 마치고 후에 답변 드리겠다. 이상이다.

총: 다른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 의견주시기 바란다.

부총: 부칙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전학대회를 개정날짜를 잡고 계신 것으로 부칙을 보면서 파악이 되는데, 오늘 많은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이번 전학대회에서 상정 가능할지 의문이 있다. 답변 안하셔도 된다.

총: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오늘 많은 중운위분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셔서 한 번 더 심의를 받는게 어떨까 한다. 오늘 중운위가 드린 내용들에 대한 수정안이 언제까지 작성이 완료될지 위원장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정이 있을지?

중감위원장: 저희가 빠르게 드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더욱 더 다시 한 번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보고 심도 있게 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운위원분들의 의견이나 단과대학별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알았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싶다. 제가 취임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업무와 관련해서 단과대별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들도 개정에 대한 내용이 진행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하는 과정이 선행이 되어야지 회칙 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 부총학생회장님께서 답변을 따로 부탁하시지는 않았는데 관련해서 이번 전학대회를 목표로 개정을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전학대회에서 개정을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는 오늘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그런 얘기들을 마주하고 등 돌릴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슈아내듯이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이 들어서, 전학대회에서는 만약에 이 개정안이 발의가 된다고 할지라도 발의가 돼서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할지라도 기존 원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최소한의 필요한 당장의 회칙 개

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인원이 저희가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인데 인원의 보충이나 모집 관련한 내용들, 논의가 어느 정도 된 사항에 대해서만 개정이 이루어지는 게 이번 전학대회는 맞다는 생각이 든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중감위의 전체 입장을 대변하진 않는다. 물론 제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중감위원장이고, 하지만 중감위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관련한 내용을 총학생회장님께 따로 전달을 드리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든다. 이상이다.

총: 네. 부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기타안건에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다. 혹시 중앙감사위원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대표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총: 없는 것으로 하겠다. 위원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다. 저희가 이제 질의가 있다면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다. 오프더레코드로 생일축하 드린다.

중감위원장: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

총: 고생하셨다. 퇴장하셔도 된다.

중감위원장: 고생하셨다.

총: 우선 연장선으로 안건상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중앙감사위원장님과 중운위 간의 논의과정은 중운위에서 안건 상정을 하나 마나를 정하기 위한 심의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즉, 중운위가 안건상정자로서 이것이 전학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만큼 개정안이 적절하나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중운위원분들이 주신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받고, 그 후 이것이 전학대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만큼 적절하고 필요하냐는 그 후에 판단함이 어떨까 싶다. 그런데 만약에 중운위 대표자분들과 중감위 내부 의견이 금 학기 전학대회에서는 개정이 시급하다, 무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운위분들의 의견을 여쭙겠다.

사과.정: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안건 상정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총: 5월 14일까지 자료집과 함께 배포되어야 한다.

사과.정: 알겠다.

부총: 일단 수정안이 다시 와봐야 알겠지만 부적절한 개정안을 그대로 전학대회에 올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결정은 나중에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으면 중감위랑 합의를 해서 다음 학기로 미루거나 해야 할 것 같다.

총: 우선 만약에 다음 주 초까지 수정안이 온다면 논의를 진행할 수 있지만, 물리적 시간적 한계 때문에 수정안을 못 드리겠다고 하면 중운위원분들은 현재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지?

인문.정: 저희도 원안에 대해서 단순개정이면 안건을 올릴 계획이 있었고 단운위도 그렇게 논의를 했는데, 지금은 단과대랑 저촉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 완전 재제정 수준이라 단운위에서 의견수렴 절차도 한 번 더 거쳐야 할 것 같다. 수정안이야 중감위 내에서 할 수 있지만 의견수렴과정까지 거치고, 이러한 수준의 제정이라면 더 폭넓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전학대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는 무리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경.정: 인문대 의견 동의한다.

사과.정: 사과대는 현재 중감위 회칙에 대한 불완전성, 불만이 많다. 왜냐하면 중감위 회칙을 한 번만 읽어보면 너무 1항과 2항이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정기감사의 일정이라든지 정기감사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회칙 상 미비한 부분이 많아, 안건의 시급성은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단순개정이면 괜찮은데 전면개정이나 단운위에서 중감위 안을 한 번 더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과대에서는 중감위 회칙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긴 한다. 하지만 중감위가 가져오는 안을 보고 싶다는 말씀이다.

부총: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문제의식은 이 개정안이 중감위가 가지는 권한 자체를 뒤바꾸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 수정안에서 해당 부분이 해결되어야 전학대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총: 저는 중감위 회칙 개정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네주신 개정안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고 이번 전학대회에서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또 문제가 되는 회칙을 토대로 2학기 감사가 진행된다. 그런 점들 고려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인문.정: 그러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수정안이 곧 전달이 될 것이다. 단운위별로 의견수렴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어떨지?

총: 네. 수정안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중감위 내부 합의 통해 수정안 달라고 말씀 드리겠다.

총: 중감위 회칙과 관련해서 추가 의견 있으신 대표자 계신지? 저는 걱정이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대표자분들도 많으신데 이 내용을 다 맥락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속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속기록 분이 4시간 40분이다. 작성이 무리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할지?

인문.정: 일단은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너무 많다 그러니까 회칙별로 속기록 말고 주요 쟁점별로 정리를 하는 게 어떨지?

총: 일단 시급하기 때문에 녹화본이라든지 녹음본을 먼저 배포를 하고 정리본은 차후에 올리는 것으로 할지?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의 얼굴과 목소리는 공유되는 것을 허락하는 건지? 개인정보가 문제가 돼서

부총: 오디오 파일만 공유하는 방법도 있다.

총: 인문대 회장님 녹화본 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빗질을 하시는데...

인문.정: 그런데 제가 회의 중에 방울토마토를 먹은 게 있어서 그게 나갈까 걱정이 되는데 상관없다.

총: 부총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음성본만 공유하는 것으로 하겠다.

사과.정: 추가적으로 단운위에 지금 중감위가 가져다주신 개정안을 열람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지, 해당 자료 공유할 수 있는지 중감위에 물어봐주시면 좋겠다. 저희도 중감위 회칙을 이번 안건으로 상정하기 힘든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너무 전면개정이라 설명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총: 내일 날 밝는대로 여쭙보도록 하겠다.

총: 중감위 회칙과 관련해서 추가의견 없으신 걸로 하고, 논의안건 2번이다. 2번과 관련해서 저희가 논의를 할 만큼 자료집이 준비가 되지는 않았다. 다만 여쭙볼 것이 지난 4월 학생총회 때 유예시간을 19시 30분까지 설정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짧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 5월 학생총회에는 20시까지 유예시간을 설정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중운위원분들 의견을 여쭙겠다.

부총: 발언해도 되는지? 저는 거기에 30분 더 얹겠다.

인문.정: 사실 유예시간이라는 것이 참고할만한 기준이 없어서 애매하긴 하다. 저도 그냥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20시보다는 저도 부총학생회장님처럼 20시 30분까지 해도 문제없을 것 같다. 혹시 참고할만한 사례가 있다면 그런 걸 가져왔으면 좋겠다. 타 대학에서 학생총회를 진행한 사례들이 몇몇 있는 것으로 안다. 그때는 어떻게 유예를 뒀는지 알아봐도 좋을 것 같다.

총: 그런데 온라인으로 학생총회를 진행한 데는 없어서 참고할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구체화된 기준은 없고 학생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기하고 계시는 학우분들께서 오랫동안 대기를 하시면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피로감도 높아질 것 같기 때문에 적절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저는 20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총님은 20시 30분이라고 말씀드렸다.

사과.정: 사과대 20시 30분 좋다.

총: 다른 대표자분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자연.비대위: 20시 30분 동의한다.

총: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20시 30분으로 하겠다. 관련해서는 자료집 작성이 완료된 후 중운위 분들에게 공유 드리고 자료집 배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통과안건은 지난 4월 학생총회에서 만들어진 것과 크게 다른 것이 없고 이번에도 그대로 가지 않을까, 몇 가지 수정된 부분은 있다마는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고 먼저 유의해주시면 되겠다. 통과안건도 제작이 완료 되는대로 공유해드리겠다. 다만 중운위 대표자분들께서 4월 학생총회 자료를 보고 통과안건 중 이런 것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자료집도 배포가 되는지?

총: 통과안건과 제안설명, 회순안내까지 모두 포함된 자료집이 일요일에 배포 예정이다. 혹시 학생총회 관련해서 추가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 계실지?

총: 없으신 걸로 하고 상정된 안건 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안건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부총: 논의는 아니고 보고를 드리려고 한다. 인권교육을 정확히 며칠 몇 시에 진행하냐는 문의가 있었다. 말씀드리면 13일 동일하게 진행하고, 7시 10분부터 강사분들이 강연을 진행할 것 같다. 아직 7시 정각에 시작할지 그 전에 시작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지는 실무자분들과 논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6시 반에서 7시 정도에 진행된다는 점은 확정이 되었다.

총: 그리고 회의가 끝나는 대로 수정된 전학대회 명단을 드릴 것이다. 명단에 회칙에는 존재하는데 엑셀파일에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직책은 따로 기재해 주시고 그 직책이 공석인 경우에는 공석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란다. 따라서 회칙 상 존재하는 직책의 수, 재적인원과 재적인원 중 당일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까지 모두 기재를 하셔서 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예를 들어 학과 같은 경우는 저희 단위는 학과 단위가 소규모라 보통 학생회장만 있다. 그런데 회칙상에는 부학생회장을 두는 경우도 허용한다고 되어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부학생회장을 기재하고 공석으로 써야 하는지?

총: 제가 해석하기로는 허용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학생회장까지만 재적인원이 아닌가 생각한다.

인문.정: 그러면 수 자체가 학생회장들 까지로만 한정되는지?

총: 네. 그 학과에 준해서는 학생회장까지만 재적인원으로 포함하는 게 어떨지?

인문.정: 그러면 저희 단위는 대부분 그래서 부학생회장있는 단위만 따로 기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다.

총: 전학대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총학생회 회칙 제16에 설명되어있으니 해당 조항 참고하셔서 작성해주시기 바란다. 위임장과 사유서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준비한 안건은 여기까지다. 정말 불타는 금요일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다. 폐회하도록 하겠다.

회의를 폐회합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